#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조직구조 개편방안 연구

2021. 12.

KAPA 한국행정학회

#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조직구조 개편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12월

연구책임 곽현근 / 대전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이현국 / 대전대학교 부교수

연구보조 김정동 / 대전대학교 석사과정



제1장	서론
1120	기 논

제1절 연구의 배경3
제1항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제2항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필요7
제3항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향상 필요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항 연구의 범위9
제2항 연구의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10
제1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10
제2항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17

# 제2장 의회사무처 조직구조 분석

조직구조의 특성27	제1절 의
조직구조 분석30	제2절 의
회 사무처 조직 30	제1형
직 인력 현황 41	제2형
회의 입법지원 조직 48	제3형
확보를 위한 의회 조직구조 51	제4형

제3장	
-----	--

# 심층면접조사

	제1절 연구방법55
	제1항 인터뷰 55
	제2절 인터뷰 분석결과 57
	제3절 소결77
제4장	의회 조직구조 개편안
	제1절 조직구조 개편원칙 85
	제1항 전문성 85
	제2항 민주성 86
	제3항 효율성87
	제4항 책임성 88
	제2절 단기개편안 90
	제1항 조직구조 90
	제2항 신설조직 94
	제3항 명칭변경 및 폐지조직 96
	제3절 장기개편안 98
	제1항 조직구조 98
	제2항 신설조직 101
	제3항 인력재배치 102
	제4절 인사관리방안 104
	참고문헌106

# 표 목차-----



[표 1] 지방의회 제도변천	10
[표 2] 지방의회 역할분류 1	14
[표 3] 의회전문성이 의원과 의회에 미치는 영향	19
[표 4] 지방의원 주요역량 분류 2	20
[표 5] 서울시 의회 역량평가 기준 2	21
[표 6] 지방의회 전문성 관련 선행연구	22
[표 7] 3단계 보좌관제 도입방안 2	23
[표 8] 국회 법제실 인력구성	44
[표 9] 국회 의정지원제도	47
[표 10] 대전광역시 입법지원 조직 업무분장표	48
[표 11] 광역시별 입법지원조직 인원구성표	49
[표 12] 대전광역시의회 혁신과제 세부추진계획 [	52
[표 13]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일시	55

# 그림 목차-----



〈그림 1〉지방의회 30년 제도변천12
〈그림 2〉 대전광역시 사무처 조직도 32
〈그림 3〉울산광역시 사무처 조직도
〈그림 4〉 광주광역시 사무처 조직도 34
〈그림 5〉 인천광역시 사무처 조직도
〈그림 6〉 대구광역시 사무처 조직도
〈그림 7〉 부산광역시 사무처 조직도 37
〈그림 8〉 서울특별시 사무처 조직도
〈그림 9〉 8기 후반기 광역의회 사무기구 현황 39
〈그림 10〉 광역의회 직원현황 40
〈그림 11〉국회 사무처 조직도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000

## 제1항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개정 지방자치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 라 한다)와 집행기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법 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와 같이 규정하 고 있음
- 핵심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의 다변화가 예상되나 자 치단체장의 선임방법 변화에 따라 의회조직의 변화 가능성이 높 은 상황임

#### □ 지방의회 조직구조의 개편 필요

-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포함되게 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41조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 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따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및 배치에 따른 의회 조직구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 정활동 등에 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됨

\*\*개정 지방자치법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 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 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정보 중 지방의회 운영 관련 정보의 공개를 담당할 인력 의 확충이 필요할 것임
-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 회)에 따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윤리 관련 조직 필요성 증대됨

\* 개정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 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직원의 임면권한과 관리권한이 지방의 회 의장에게 부여됨

※ 개정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사무직원의 임면, 인사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의 확대

-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국제교류 및 협력'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외국 지방자 치단체와의 교류·협력과 같은 사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 위에 포함되면서 의회의 국제교류 및 협력 사무의 확대가 예상됨
- 지방자치법 제195조는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 제195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 · 협력 등

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 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야 한다.

○ 향후 해외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의회의 감시·감독 및 협력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함

#### 제2항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필요

#### □ 행정의 복잡화 전문화

- 사회문제가 다변화되고 복잡화되면서 이를 해결해야 하는 행정도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있음
- 행정의 복잡화와 전문화에 따라 의회의 역량도 이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전문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의회의 조직·인사권의 제한으로 한계가 있었음
- 시민대표로서 의원의 전문성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좌할 수 있는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

-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방분권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앙의 권한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음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방정부의 집행부 권한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나 강시장-약의회 구조에서 시장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집행부에 대한 견 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은 점차 가중되고 있음
- 입법영역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재정(예산) 분야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회 구조로는 가능성이 낮음
- 의회의 조직구조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재 편성할 필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제3항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 향상 필요

#### □ 지방의회에 대한 높은 불신풍조

-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의 비리·금품수수, 품위위반 행동은 언론의 주된 관심을 받게 되면서 주민들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불신을 강화하고 있음
- 다수 의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일탈행동이 전체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임
- 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강화를 통해 전체 의회에 대한 대국민의 신 뢰를 회복해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 시민소통 강화의 필요성

- 대한민국과 같이 소용돌이 중앙정치 사회에서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은 의원들의 다양한 노력과 역할에 대한 무관 심을 불러오고 있음
-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의회의 다양한 역할과 성과들이 제대로 주 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부정적인 뉴스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 의회 스스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제1항 연구의 범위

- 본 연구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 조직구조 개편방안을 모 색하는 것을 주된 연구의 범위로 함
-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요인 분석,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조직구조 분석, 대전광역시 의회의원 및 직원에 대한 인터뷰등을 통해 조직구조 개편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의 지역적 범위는 대전광역시의회로서 대전광역시의 회 조직의 구조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둠

#### 제2항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회의 조직구조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할 것임
- 첫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요인을 도출할 것임
- 둘째, 광역자치단체의 의회 사무처 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전 광역시의회 조직구조 개편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할 것임
- 셋째,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조직구조 개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임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제1항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물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000

-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에 주어진 권한에 대한 조정이 핵심이기 때문임
- 이에 지방의회의 권한은 <표1>과 같이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에 연계해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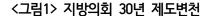
#### <표1> 지방의회 제도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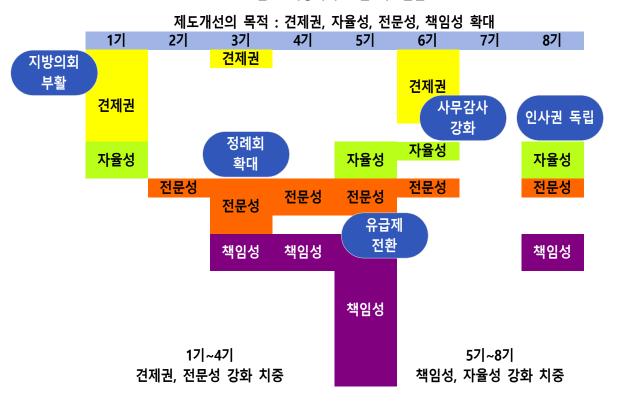
시기	개정	주요제도 개선 사항	접근
	1988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의회부문 적용	
	1989.	- 행정사무감사권 도입	견제권
	12.39	(나찬러) 나드는 소리 사이의 또는 투범이의 함에 나	
		- (시행령) 시도는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21-021
	1991.	시군구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견제권
	4.1	- (시행령) 행정사무감사 기간 : 시도 5일 이내, 시군구	견제권
		3일 이내	
	1991.	- 정기회 집회일, 회기일수 변경	자율성
제1기	12.31	- 관계기관 관련서류 등 제출 요구권	견제권
	1992.	- (시행령) 시도, 시군구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	거테긔
	2.15	위원회에서 감사	견제권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전문성
	1994.	-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대 : 시도 10일 이내, 시군구 7일	견제권
	3.16	이내	
		- 의회규칙 제정권	자율성
	1994.	- (시행령) 시도, 시군구 모두 본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거제긔
	7.6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견제권
제2기	1995.	- 광역의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 도입	전문성
^   <b>∠</b> /	4.1	^ ㅇㅋㅋ되라면 인기에 미네네표에 포함 	[ 민준 0

	1998. 4.30	- 지방의원 정수 축소	책임성
제3기	1999. 8.31	- 회의 수당을 회기 수당으로 전환 - 상,하반기 연 2회 정례회 제도 도입 - 지방의회 위원회의 의안발의권을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 의장 및 의원에 대한 제척대상 범위 확대 -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 추가	전문성 전문성 전문성 책임성 견제권
	2003. 7.8	- 지방의회의원 명예직 규정 삭제	전문성
제4기	2005. 1.27	-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 - 주민소송제도 도입 - 위법한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통제 강화	전문성 책임성 책임성
제5기	2006. 4.28	- 유급제 도입(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 회기 중 지급하던 원격지 회의출석비 지급제도 폐지 - 지방의회 회기운영 및 상임위원회 설치 자율화 - 지방의회 위원회 전문위원 증원, 전문위원제도 확대 - 지방의회 사무직 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에 위임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윤리강령 및 조례 제정 의무화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책임성
	2009. 4.1	- 겸직금지 확대 - 정당가입이 가능한 교원에 대해 지방의회의원 임기 중 휴직 보장 - 지방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금지	책임성 책임성 책임성 책임성
제6기	2011. 7.14	-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시도 14일, 시군구 9일) -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 신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근거마련 - 임시회 소집공고일 단축, 조례안에 대한 예고제도 도입 - 단체장이 제출하는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제도 도입	견제권 견제권 견제권 전문성 견제권
	2014. 1.21	- 지방의회의 대의기관 명문화	자율성
제7기		- 변동사항 없음	
제8기	2021. 1.12.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 정례회 집회일, 임시회 소집 요구, 의안 발의 조례 위임	전문성 자 <del>율</del> 성

(2022.	- 의회사무기구 직원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	자율성
1.13.	-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조항 정비	책임성
시행)	-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책임성

출처 :홍준현(2021)





출처 :홍준현(2021)

-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는 지방분권이 지방민 주주의 강 화로 이어질지는 의문임
-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한 분권 정책은 지방으로 이양된 권한을 누가 행사할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기 때문임

- 그 결과가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로 대표되는 제왕적 단체장이 출현함
- 지방분권이 지방민 주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제왕적 단 체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그러나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부족으로 단체장에 대한 견제기 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보다 중요 한 시대적 과제임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에 대해 살펴보려면 현재 가진 권한과 기능 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함
- 지방자치법은 제39조에 지방의회의 권한을 명시함
- 구체적으로 첫째, 조례의 제정, 개정의 폐지 둘째, 예산의 심의, 확정 셋째, 결산의 승인 넷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다섯째, 기금 의 설치, 운용 여섯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 분 일곱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여덟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의 포기 아홉째, 청원의 수리와 처리 열 번째,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열한 번째,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 대전광역시의회는 의회의 권한을 첫째, 예산심의, 둘째, 조례 재· 개정, 셋째, 집행부 감시·감독, 넷째, 시의 재산 관리와 사용료, 수 수료,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결정, 다섯째, 청원 처리로, 의 회의 지위는 첫째, 주민의 대표기관, 둘째, 자치입법기관, 셋째, 집행감시기관으로 규정함

○ 기존 연구에서도 의회의 역할을 다양하게 분류함

<표2> 지방의회의 역할분류

학자	지방의회의 역할
김영종(1997)	정책입안자, 정책심의자, 행정감시자, 민의수렴과 해결자, 행정홍보자
오을임(2001)	정책입안, 정책심의, 행정감시, 민의수렴과 해결
김병준(2002)	문제발견자와 정책제안자, 집행의 감시와 독려자, 분쟁의 조정자, 민원해결자, 합리적 분권 운동가
이달곤(2004)	체제유지, 대표, 의결

출처 : 배응환(2010)

- 다양하게 규정된 의회의 권한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선행연구가 있음
- 배응환(2010), 황동연, 배귀희(2019), 조순제(2012), 김유라
   (2018), 서우선(2006)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고,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함
- 서우선(2006)은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분권과 함께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원리 이행, 2) 집행기관의 권한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에 대한 '비례원칙'적용, 3)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정립이 필요하다고 주 장함
- 이를 위해 행정부, 입법부, 헌법개정, 지방의회 사무기구 독립의 다섯 가지 방식을 제안함
- 행정부의 정책 시행에서 1) 지방의회 소관 예산의 확대, 2)결산에

대한 회계 검사기능의 강화, 3) 행정사무감사, 조사 결과처리에 대한 사후 검증제도 도입, 4) 지방재정의 자주성, 자율성 보장 및확대임

- 입법부의 법률 정비에서 1)지방의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 제정 2)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확보제도 도입 3) 조례 입법 및 예산안 심사권한 강화 4) 행정사무감사, 조사 권한 강화 5)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현실화 및 회의수당 부활 6) 기타 안 건심사, 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 권한 강화임
- 합법개정 차원에서 1) 자치입법권 보장 2) 지방예산결산제도의 개 혁 3) 국가의 지방자치 육성 및 국민교육 의무화임
- 지방의회 사무기구 독립에서 1) 사무기구의 조직 보강, 2) 의회공 무원의 인사제도 개선, 을 제안함
- 황동연과 배귀희(2019)는 의회의 위상과 권한이 의원의 역량과 직결되어 있으며, 의원의 역량강화가 의회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주장함
- 의회와 의원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1) 의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연수, 2) 정책보좌를 위한 인적 지원과 입법정보시스템이라는 물적 지원 등 의원을 지원할 제도 개선, 3) 자치권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함
- 김태영(2018)은 지방분권으로 돌아온 권한을 지방의회에만 맡겨 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함
- 이와 같은 질문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제왕적 단체

장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지 않은 반면, 최근 풀뿌리 주민조직의 성장속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 김태영(2018)의 연구에서 전문가에 대한 FGI 결과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 헌법정신에 견주어 보면 더 타당하지만, 우리의 정 치·행정문화에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가가 우려를 제기함
- 김태영(2018)은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형태로 추 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전문가 조사를 수행했고, 응답한 전문가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시도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점에는 동 의하지만, 시민들이 실시간 정치에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 설기구인 지방의회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답변함
- 다만, 의원들의 역할이 현재와는 달라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 시함
- 주민참여와 의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2020년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혁신추진단에서 제출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보고 서'에서도 의원역량강화와 함께 시민과의 소통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의제에서도 확인 가능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회의 역할과 기능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제2항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는 물론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에 주어진 권한에 대한 조정이 핵심이기 때문임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것은 점차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막강한 정보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지 못한다면 단순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한 상우, 2007)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은 크게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적 측면에서 보좌인력의 전문성 강화 로 구분함
- 기존 연구들은 보좌인력 제도로 전문위원제도<sup>1)</sup>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해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함
- 국회의원의 경우 8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의정활동의 지원을 받는 반면 지방의원은 '전문위원제도'에 국한되어 있음(류춘호, 2020)

<sup>1)</sup> 지방자치법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강상원·최병대(2010)는 인사권독립,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및 관리방식, 의원교육 및 연수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재태(2019)는 유급보좌관제도 도입, 지방선거제도 개편을 들고 있음
- 진세혁·임병현(2005)은 외국의 지방의회 정책보좌기능에 대한 연 구를 통해 정책보좌관제도의 도입을 주장함
- 임승빈(2013)은 전문성 강화에 대해 상위법령의 근거 불충분, 지 방재정력의 건전성 약화, 보좌관의 개인비서화를 이유로 시행되 지 못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최근에 전문적인 정책지원기구를 설치한 광역의회가 증가 하고 있으며 대부분 입법정책담당(관)의 형태로 정책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있음
- 개정 지방자치법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됨
- 의원 개인에 대한 보좌가 아닌 조례안 작성, 예산안 심의 및 행정 사무 감사 등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됨
- 향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경우 전문위원회 방식으로 위원회에 둘 것인지 또는 사무처에 둘 것인지에 대한 개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승철(2019)은 의회전문성이 의원과 의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첫째, 의원의 연봉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것임
- 둘째, 의회의 회기일자가 길수록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지식 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의회 전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임

○ 셋째, 의원 1인당 직원 수가 많아질수록 의회전문성이 강화된다 는 것을 볼 수 있음

<표3> 의회 전문성이 의원과 의회에 미치는 영향

의회 전문화 요건	의원에 미치는 영향	의회에 미치는 영향
의회에 미치는 영향	- 더 오랜기간 의원직을 유지 -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함	- 경험 많은 의원의 축적으로 보다 전문적인 의회 구성 - 보다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의원확보에 용이
의회 회기일자	- 보다 많은 시간을 의정활동에 투 자함으로써 높은 보상을 받게 됨 -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 축척	- 보다 질 높은 정책수립 및 심의 활동에 기여
의회직원 수	-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 - 높은 직업 만족도 - 높은 재선 가능성	- 정부와 동등한 조건에서 정책 수립 영향력 확보

출처: Squire, Peverill. (2007).

#### □ 지방의원 전문성 강화

○ 의원의 전문성을 의회가 가진 권한을 얼마나 적정하게 활용하느 냐의 관점의 역량으로 접근한 연구가 있음

<표4> 지방의원 주요역량의 분류

	선행연구				
역량선행 연구	최인수· 김건위 (2016)	최근열(2015)	김찬동 (2010)	신민철 (2016)	문원식· 임정빈 (2017)
대의역량 (소통역량)	-민주성 (주민대표성)	- 지방의회 및 의원의 의무와 책임성 강화		-민의수렴 (정책의제의 환류)	-방향설정, 여론수렴 역량
입법역량	-의정활동 전문성	- 자치입법권의 강화 -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위해 보좌인턴제	-조례 제정	-입법제정 (정책의 형성)	-기능적 지식, 핵심기술
정책역량		- 정책연구기능 강화, 의정비 제도의 개선 등 - 의결권, 예·결산 심의권의 확대 및 강화	-예산 심의 의결	-재정심의 (정책분석)	-기능적 지식, 핵심기술
행정관리 역량	-행정감사 능력	-사무직원의 인사권의 환원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기능 강화	-행정 사무 감사	-행정감시 (정책통제)	

출처 : 박기관 외(2018)

- 황동연, 배귀희(2019)는 서울시의회를 중심으로 의원역량을 1) 입법역량, 2) 정책역량, 3) 행정관리, 4) 대의역량으로 구분하고 평가를 진행함
- 평가 결과 네 가지 역량강화를 위해 의원 개인에 대한 지원과 조 직차원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함을 주장함

〈표5〉 서울시 의회 역량평가 기준

역량 선행연구	정의	평가 기준	
대의역량 (소통역량)	- 민주성(주민대표성)	- 의원 1인당 시민의 수 - 의원 1인당 민원처리 규모	
입법역량	- 의정활동 중 조례 및 규칙 제정	- 조례 제정 건수	
정책역량	- 집행부의 예결산 심의·의결	- 예결산 심의·의결 건수,	
행정관리역량	- 행정감사능력	- 행정감사 처리	

출처 : 황동연, 배귀희 (2019)

- 지방의회의원 개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원의 겸직금지, 의정활동비 증액 등을 통해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이 의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최봉기, 1993). 의원개인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실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당선 전 전문성보다 당선 후 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김영하(2011)는 형식적 연례행사로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한연찬회보다 상임위 중심의 연수와 학습이 중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함
- 의원 전문성을 강화를 위해 지방의원의 연수가 중요함에도 실질 적인 교육과 학습의 기회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는 논의도 있음
- 채원호(2010)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 지방의회연수에 대한 법령 과 조례의 정비, 2) 지방의원 전무연수원의 설립, 3) 연수기획 능 력의 강화 또는 연합연수 등 다양화, 4) 지방의원 직무능력 향상 을 위한 의견수렴 및 학습콘텐츠 개발, 5) 온라인 지방의정연수의 실시, 6)해외연수 개선을 제안하고 있음

<표6> 지방의회 전문성 관련 선행연구

구분		내용		
지방의회 의원 전문성	박천오 외 (2008)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 연수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개선, 연수결과 평가의 체제화		
	김학만 (2010)	의원연수의 공급형태, 참여대상, 연수시기, 연구목표, 내용 및 방법의 개선		
향상	허훈(2010)	연수의 목적, 유형, 기관, 프로그램, 예산등의 개선		
	김종세(2019)	의정전문기관 설치, 의회교육프로그램 개선		
	황아란(2003)	전문위원회 제도개선		
	서울특별시의 회(2005)	입법보좌관제도 및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전문위원회제도 개선		
	장영두(2006)	사무인력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도 도입, 전문위원실 강화		
지방의회 지원체제	안영훈(2007)	전문보좌기관 설치, 전문위원실 확대, 개인보좌관 제도 도입		
지면세세 전문성 향상	조석주·박기관 (2010)	사무인력 인사권 독립, 전문위원회제도 개선, 개인보좌관제 도입		
	금창호·강신일 (2014)	지방의정센터 설립		
	유동상·강인호 (2016)	광역정책지원단 설립		
	김종세(2019)	지방자치의회 전문교육기관 설립		
추처: 이스처/20	4.0\			

출처: 이승철(2019)

#### □ 제도적 측면에서 보좌인력의 전문성 강화

- 사회가 복잡해지고 문제도 다양해진 만큼 의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
- 의원 개인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지 원할 전문인력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안영훈(2013)은 3단계에 걸친 단계적 보좌관제 도입을 제안함

#### <표7> 3단계 보좌관제 도입방안

방안	내용	사례
제1단계 의장 소속하에 전문보좌 기관 설치, 운영	-의장 소속으로 의정 활동의 전문성을 지원할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법 -현행법제 및 정책지원실의 확대 운영형태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가 그 사례임 ※ 국회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는 국회사 무총장 소속이 아닌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 되어 있음(정당출신 인사로 임명되는 사무총 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
제2단계 상임위원회별 정책 전문위원실 설치안	-현재 광역의회 상임 위원회별 전문위원실을 확대개편 -전문위원 또는 입법 조사관을 임명하여 위원회에서 보좌함	-광역의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광역의원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아래 세부분야별 전문가로 입법조사관을 2-5 명씩 두어 전문위원이 위원회 수준에서 광역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전문위원제'의 활용 -로스엔젤레스 시의 입법기능 보좌를 위한 의회입법분석실(Office of Chief Legislative Analyst)의 구성인력은 각 분야 전문가로 충원하고 있음
제3단계 광역의회 의원의 개별 보좌관제 도입 방안	-광역의원 개인별로 보좌관을 지원하는 안과 '인턴제'로 제도정착 시까지 지원함	-의회내 상임위원회에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관련된 자료조사 및 분석기능을 수행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을 보좌하도록 함 -또는 광역의원에게 일본의 정무조사비와 같은 성격의 개인별 보좌관제를 활용하도록

광역의원 임기 내에 한정한 별정직 형	형태의
개인보좌인력 확보 방안임	
-부수적으로 '인턴제'로 보좌인력을 지	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개인보좌관제'가 정	착될 수
있을 때까지 이를 과도적인 조치로	
활용하도록 함.	
-로스엔젤레스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u>-</u>
상근보좌관제(City Hall Staff)와 같음	

출처 : 안영훈(2013)

- 안영훈(2013)은 시도의원에 대한 보좌관제도의 도입은 1) 지방의원의 개별 의원입법의 기능 강화, 2) 심도 있는 예결산심의 및 감사기능을 강화, 3) 지방의원의 개별민원 해결과 의정활동의 질을제고와 활동범위를 확대, 4) 지방행정 및 의정 전문성과 사회봉사의지를 가진 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주장함
- 전문성 강화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도 있음
- 이승철(2019)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방의회연 구원을 제안함
- 법령의 제약, 재정확보의 어려움, 지역사회의 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필요한 지역관련 정책조사, 연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회연구원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임
- 다만 개인보좌가 아닌 공동지원체제라 의원의 선호가 낮을 수 있고 개별의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함

제2장

의회사무처 조직구조 분석

제1절 의회사무처 조직구조의 특성 제2절 의회사무처 조직구조 분석

- 000
-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사무처는 기관대립형의 지방자치기관 구성 에 따라 의회의 사무처리를 전담하는 조직임
- 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90조 사무처 등의 설치에 근거해 사무 처를 설치하고 있음
- 여기서 지방의회의 사무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조직구성 이 달라질 수 있음
- 의원 개인의 의정지원 의무는 지니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과 (최진 혁 외. 2019) 의회의 사무는 의원의 의정 활동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은 지방의회 사무처의 사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임용 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이동영, 2021)
-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

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사이에 적용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의 직원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함(홍정선. 2013)
-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 결과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사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수밖에 없기 때문임(이기우/하승수, 2007)
- 이관행(2014)은 사무직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조직의 자율성 침해, 사무기구 보좌기능의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사무처 설치 조례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사무처 증원이 필요할 때마다 집행부와 협의해야 하는 실정으로 인해 의회조직의 자율권이 침해될 수 있 다는 것임
- 또한,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 이 행사함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기능 수행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잦은 인사 전보로 인해 전 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제를 넘어 중앙정부에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를 통제한다는 주장도 있음
- 권영주(2011)는 중앙정부가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통제하고 있으

며 이는 1) 사무기구의 명칭에 대한 통제, 2) 공무원의 직급기준에 대한 통제, 3) 사무기구 정원에 대한 통제, 4) 인사권에 대한 법률적 관여,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양한 통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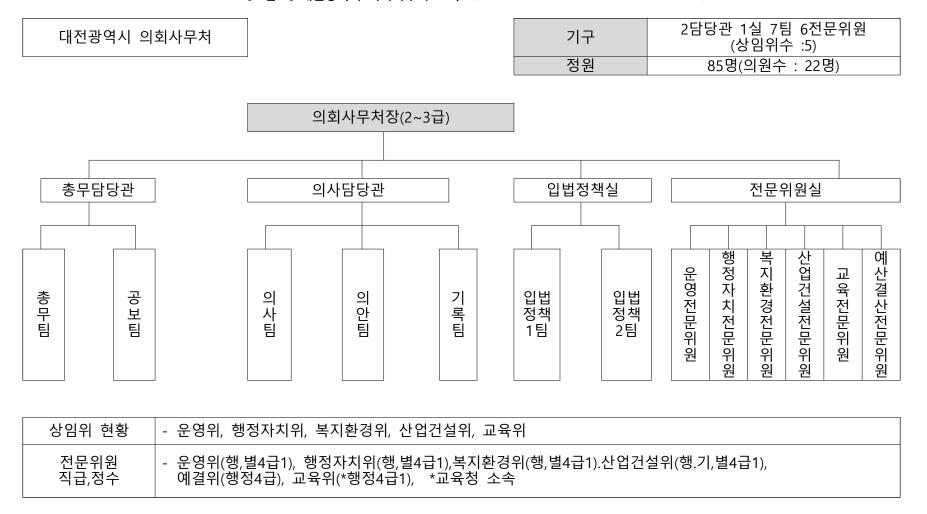
#### 000

# 제1항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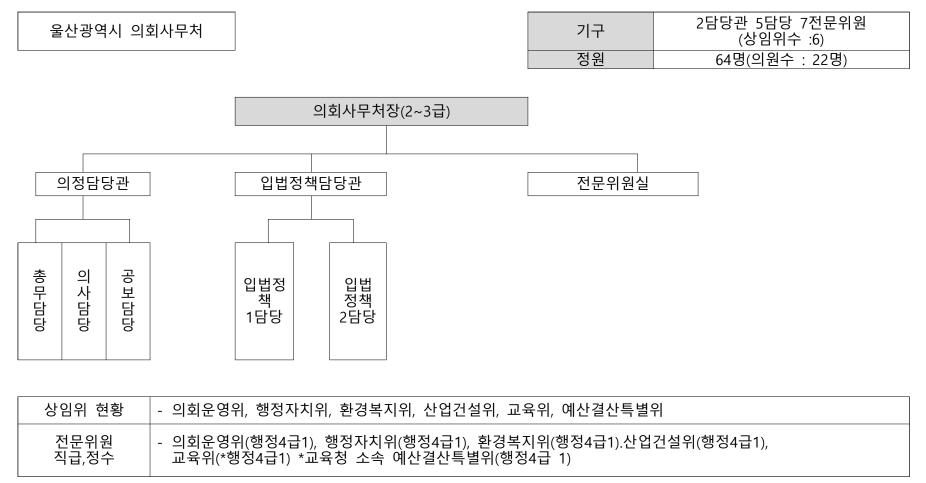
- 현행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은 1실 2담당관과 전문위 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총무담당관에는 총무팀과 공보팀을 두고 있으며, 의사담당관에는 의사팀과 기록팀, 의안팀을 두고 있고, 입법정책실에는 입법정책 1, 2팀을 두고 있음
- 총무담당관실에는 총무담당관을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의장비서실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의원부속실에는 8명의 보좌관이 근무하고 있음
- 의사담당관실에는 담당관 포함 20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입법 정책실에는 실장 포함 16명이 근무하고, 6개의 전문위원실에는 수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1인, 주무관 3-4인이 근무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규모의 광주광역시 의회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의 3개의 담당관과 7개의 담당, 7개의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음
- 울산시의회는 의정담당관과 입법정책담당관 2개의 담당관과 5개 의 담당, 6개의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음
- 인천시의회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의 3개 담 당관과 10개의 담당, 6개의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음. 입법정책 담 당관 아래 예산정책분석담당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대구시의회는 의정정책관의 1정책관과 홍보담당관, 입법담당관의

- 2담당관, 12팀, 7개의 전문위원실을 두고 있음. 전문위원실마다 행정직과 별정직 전문위원을 각각 배치한 특징이 있음
- 부산시의회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 관의 4개 담당관과 9팀, 7개의 전문의원실을 두고 있음. 타 광역 시에 비해 규모가 큼에도 전문위원실별 전문위원 정수가 1명인 특징이 있음
- 서울시의회는 언론홍보실의 1실, 의정담당관 의사담당관, 시민권 익담당관, 입법담당관, 예산정책담당관의 5담당관, 20팀, 11전문 위원실을 운영하고 있음. 전문위원을 행정직 없이 개방형 직위와 일반임기제로만 구성한 특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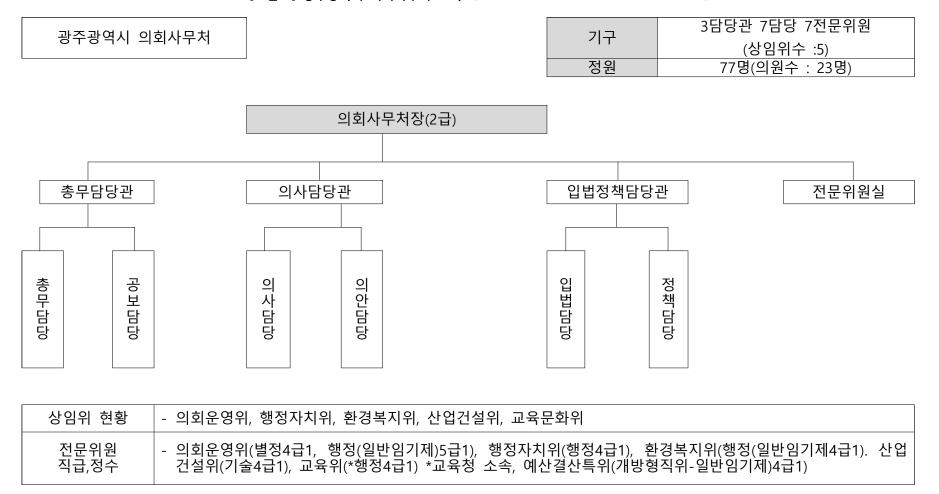
[그림 2] 대전광역시 의회사무처 조직도(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그림 3] 울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조직도(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그림 4]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 조직도(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 [그림 5]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조직도(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3담당관 10담당 6전문위원 (상임위수 : 6)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기구 정원 98명(의원수: 37명) 의회사무처장 입법담당관 의정정책과 홍보담당관 전문위원 의회 운영 문화 산업 건설 기획 교육 행정 복지 경제 교통 법제 예산 법제 문 화 복 지 기 건 설 교 교 총무담당 관리담당 공보담당 의회운영 의사담당 의안담당 기록센터 산업경제 입법 · 획 행 정 정책 지원 지원 정책 분석 2 담당 육 담당 담당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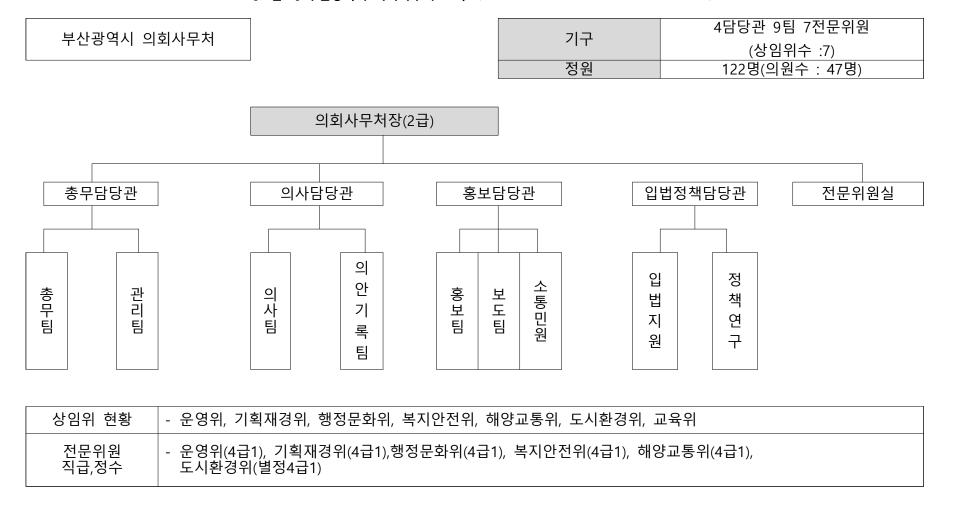
상임위 현황	- 의회운영위, 기획행정위, 문화복지위, 산업경제위, 건설교통위, 교육위
전문위원 직급,정수	- 의회운영(행.별4급1), 기획행정(행정4급1), 문화복지(행,별4급1). 산업경제(행정4급1), 건설교통(기술4급1), 교육위(*행정4급1) *교육청 소속

[그림 6]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 조직도(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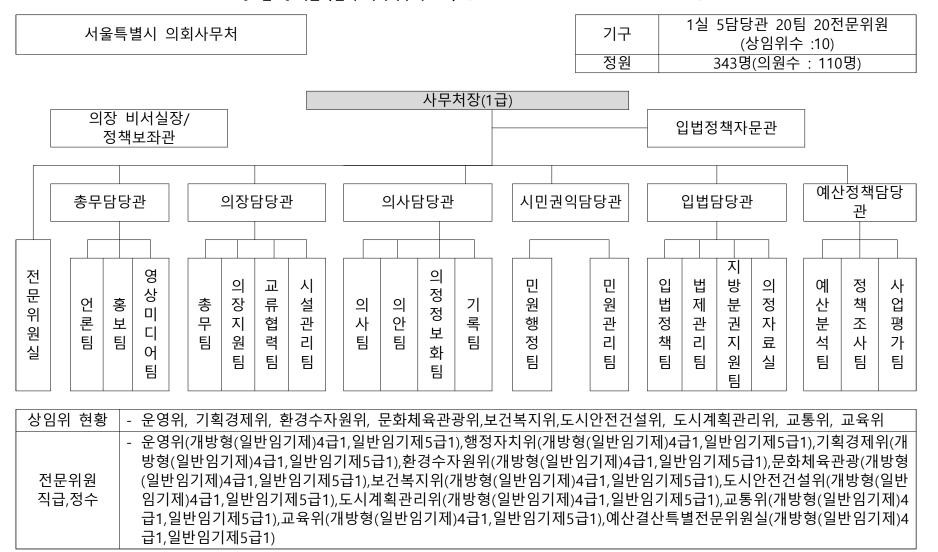
다	H구광역시 의 <u>역</u>	회사무처				기구 1정책관 2담당관 12팀 7전 (상임위수 :7)					
						정원		91명(의원수 : 30명)			
					1						
			의회사되	₽처장(2∼3급) -							
의경	정정책관	홍보딛	당관	입법담당관				전문	l위원		
총무팀	의 사 팀	공 보 실	시 민 소 통 팀	입 법 정 책 팀		아 명 때	기획행정팀	문화복지팀	경 제 환 경 팀	건설교통팀	교육팀
	의 현황 -			 한복지위, 경제환경위, 건설I	0 -	- 0 01 -:			1	1	

상임위 현황	- 운영위, 기획행정위, 문화복지위, 경제환경위, 건설교통위, 교육위, 예결특위(상설)
전문위원	- 운영위(행,별4급1), 기획행정위(행,별4급1), 문화복지위(행,별4급1). 경제환경(행,별4급1),
직급,정수	건설교통위(행,기,별4급1), 교육위(행,별5급1), 예산결산특위(행,별4급 1)

### [그림 7]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조직도(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그림 8] 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 조직도(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 [그림9] 8기 후반기 광역의회 사무기구 현황

# [광역의회 사무기구 현황 요약]

□ 광역의회 직원 현황

○ 직원 총수 : 2,587명, 정원 : 2,006명(일반직, 별정직, 일반임기제)

※ 실무원 : 기간제 계약직, 공무직 : 무기 계약직, 기타 : 청소,경비,지원근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총계	418	150	111	140	103	105	76	68	374
소계(정원)	343	122	92	100	71	85	64	45	259
일반직(정원)	206	104	70	96	58	65	55	43	191
별정직(정원)	9	1	9	3	2	9	2	1	6
일반임기제(정원)	128	17	13	1	11	11	7	1	62
시간선택제	51	5	4	20	17	-	-	10	64
교육청소속	9	9	7	10	5	8	6	5	18
실무원	0	2	-	ı	1	4	1	1	9
공무직	10	12	8	10	9	8	5	5	15
기타	5	-	-	ı	-	ı	-	2	9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총계	118	92	131	117	153	148	136	147	2,587
소계(정원)	96	78	91	94	104	117	114	131	2,006
일반직(정원)	92	75	75	74	82	94	94	102	1.576
별정직(정원)	-	1	2	1	2	6	3	29	86
일반임기제(정원)	4	2	14	19	20	17	17	-	344
시간선택제	3	5	18	-	16	12	-	9	234
교육청소속	8	7	14	2	9	5	4	7	133
실무원	-	-	1	-	1	-	-	-	20
공무직	4	2	6	15	22	10	14	-	155
기타	7	-	1	6	1	4	4	-	39

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 [그림10] 광역의회 직원 현황(출처: 2021.03 행정안전부 8기 지방의회 후반기 현황)

		직	직				일	반직	(A)				ŀ	별정	직(B	)	일턴	반임	기제	(C)	시	간선틱	성제 은	]기제	(C)		교육 소속	국청 ÷(E)			기	무기	
지역	구분	지원규모(A ~ H)	지원정원(A ~ C)	소 계	1급	2 급	3	4 급	5 급	6대이하	지방전문경력관	관리 안80지 간	소 계	4 11	5 급	6년110상	소 계	4 1급	5位	6급이하	소 계	가	나	다	라 마	소 계	4급	5 급	6급이하	소방직(F)	기간제근로자(G)	무기계약그로자(H)	기 타 (l)
연번	합계	2,587	2,006	1,576	1	13	3	114	226	1,144	14	61	86	27	37	22	334	31	42	271	234	6	11	48	169	133	14	16	103	4	20	155	35
1	서울	418	343	206				4	26	150	4	21	9	2	4	3	128	13	20	95	51			2	49	9	1	1	7			10	5
2	부산	150	122	104		1		9	18	76			1	1			17			17	5				5	9			9		2	12	
3	대구	111	92	70		1		2	10	57			9	6	2	1	13	1	1	11	4				4	7		1	6			8	
4	인천	140	100	96		1		6	16	65	1	7	3	2		1	1			1	20				20	10	1	1	8			10	
5	광주	103	71	58		1		4	7	43		3	2	1		1	11	3	1	7	17		1	1	15	5	1		4		1	9	
6	대전	105	85	65		1		4	11	46		3	9	4	2	3	11		1	10						8	1		7		4	8	
7	울산	76	64	55			1	6	5	43			2		1	1	7	1		6						6	1		5		1	5	
8	세종	68	45	43			1	5	5	32			1		1		1			1	10				10	5	1	1	3	1	1	5	1
9	경기	374	259	191		1		14	28	147	1		6	2	1	3	62	2	6	54	64		4	28	32	18	2	4	12	1	9	15	8
10	강원	118	96	92			1	10	16	64	1						4			4	3				3	8	1	1	6			4	7
11	충북	92	78	75		1		8	12	39	1	14	1			1	2		2		5	3	1		1	7	1	1	5			2	
12	충남	131	91	75		1		7	13	54			2			2	14	3	2	9	18		1	3	14	14	1	1	12	1	1	6	
13	전북	117	94	74		1		7	10	56			1	1			19	1	1	17						2		1	1			15	6
14	전남	153	104	82		1		910	14	57			2			2	20	1	2	18	16				16	9	1	1	7	1	1	22	
15	경북	148	117	94		1		7	11	68	3	4	6		5	1	17	3	5	9	12			12		5	1	1	3			10	4
16	경남	136	114	94		1		7	15	71			3			2	17	3	2	12						4		1	3			14	4
17	제주	147	131	102		1		4	9	76	3	9	29	7	21	1					9	3	4	2		7	1	1	5				

# 제2항 국회 조직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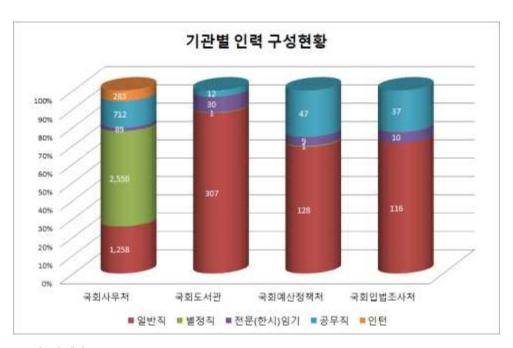
### □ 국회 기관별 인력총괄

- 국회 기관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로 구성되어 있음
- 지방의회와 달리 예산 및 입법 연구기능이 예산정책처와 입법조 사처로 사무처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특징임
- 국회사무처 조직이 4,896명으로 가장 많고, 국회도서관 351명, 예산정책처 186명, 입법조사처 16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회사무처는 의원의 임기와 함께하는 의원보좌직이 많기 때문에 별정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기준 : 현원)

-						(112 12)
	구분	국회시	나무처	국회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	정무직	2	1	1	1	1
	일반직	1,2	258	307	128	116
별정직	의원보좌직 사무처 교섭단체	2,550	2,359 114 77	1	1	-
	문임기제 한시임기제	8	9	30	9	10
-	공무직	7	12	12	47	37
	인 턴	28	33	-	-	-
	총계	4,8	396	351	186	164

출처: 국회 사무처, 국회 인력통계 202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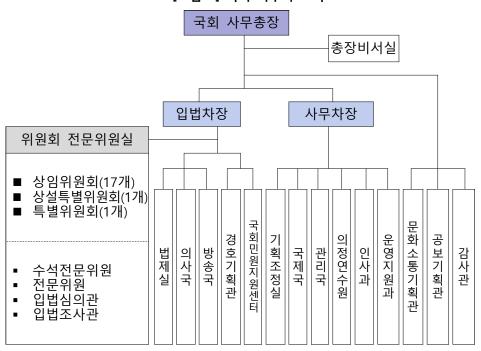


※ 정무직 제외

# □ 국회사무처 조직 구성

- 국회사무처 조직은 국회의 입법 및 예산, 결산심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사무총장 이하 2차장, 2실, 4국, 1원, 4관, 39과로 구성 되어 있으며, 17개 상임위원회, 1개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 및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조직도는 [그림11] 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그림11] 국회 사무처 조직도



출처: 2021년도 국회 사무처 주요업무계획

○ 국회 조직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3,882명으로 이중 국회사 무처 직원은 1,405명, 의원보좌직원은 2,400명, 교섭단체 정책연 구위원은 77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국회사무처 직원	의원보좌직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계
정	원	1,405	2,400	77	3,882

○ 국회사무처 직원은 정무직 4명, 별정직 124명, 일반직 1,277명의 총 1,405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 분		정원	현원	과부족
		:	정무직	4	4	0
			별정직	124	114	-10
		(	일반직	1,277	1,258	-19
		사두	<sup>1</sup> 처 소계	1,405	1,376	-29
		의	원보좌직	2,400	2,359	-41
		소	계	3,805	3,735	-70
공			선문임기		85	
무			제전문임기		4	
원		현	<u>·</u> 시임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49	49	
		정책연구	미래통합당	28	28	
		위원				
		-				
		소		77	166	
			계	3,882	3,901	
비비		인턴	회관인턴		283	
공	.	공무직	기간제		152	
무		017	무기계약		560	
원		소	계		995	
	<u> </u>	국회사무처	총계		4,896	

- 국회의 입법정책 지원 기능은 법제실에서 담당하고 있음
- 법제실은 법제총괄, 사법, 행정, 교육과학기술문화, 여성복지, 정무환경, 재정, 산업농림해양, 국토교통, 법제연구분석으로 구분되어 있음

## [표8] 국회 법제실 인력구성

구분	계	법제 총 <u>괄</u>	사법		교육과학 기술문화		정무 환경	재정	산업 농림해양	국토 교통	법제 연구분석
계	80/86	14/14	7/7	8/8	8/9	8/9	8/9	7/8	7/8	7/7	6/7
과부족	△6	-	-	-	△1	△1	△1	△1	△1	-	△1
1.2급	1/1	1/1	-	-	-	-	-	-	-	-	-
2.3급	2/2	2/2	-	-	-	-	-	-	-	-	-

3.4급	10/10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4.5급	44/47	5/5	4/4	4/4	5/6	6/6	6/6	4/4	3/4	4/4	3/4
6급이하	23/26	5/5	2/2	3/3	2/2	1/2	1/2	2/3	3/3	2/2	2/2

○ 법제실의 주요업무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국내 외의 법제에 대한 연구, 그 밖에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관한 지 원임

부서	주요담당업무
비계초자기	- 정무(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외교통일·국방위원회 및 정보위원회 소관
법제총괄과 	- 실 주요사업 기획·행정처리 및 예·결산 -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 등에서 요청한 법제자료의 접수·분류 및 발송 -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사법법제과	-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행정법제과	- 행정안전위원회(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제외) 소관
교육과학기술	-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법제과	소관
	-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정무환경법제과	- 정무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및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재정법제과	-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지방재정 및 지방세제) 소관
산업농림해양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과	소관
국토교동업세과	-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 법률의 위헌성 및 법률간 상충여부에 관한 분석·검토
	- 법률안 입안 심사기준 연구 및 법률표준화정비 추진
법제연구분석과	- 국내외 법제와 그 운용 등에 관한 조사연구
	- 법제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간행물 발간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관한 분석·평가 및 관련 기획·연구·관리

○ 법제실의 법률안 입안절차는 국회의원이 입법아이디어 발굴 후 필요한 경우 법제실에 입안을 의뢰하면 법제실은 외부전문가 자 문, 전문가간담회, 법제관 합동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안 입 안 후 의원실에 송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

## □ 국회 의정지원제도

○ 국회의 의정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표9>와 같으며, 향후 지방의 회의 조직개편시 국회 의정지원체계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9> 국회 의정지원제도

구분		조직 차원	지원제도		개인차원 지원제도
一十正	법제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의원 보좌진
직무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행정입법에 관한 분석· 평가 및 연구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국가예산·결산·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의 분석·평가와 정책 대안개발 -외국의 예산·결산 및 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입법조사 및 연구 -입법참고 질의회답 -입법지식 DB구축· 운영 -입법관련 정보 제공	-법률안·예산안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 에 대한 자료제공 -의사진행의 보좌 등	-국회의원의 입 법 활 동 등 지원제도 (정책보좌) -지역(정무) 보좌 -사무보좌
지휘· 감독 관계	-국회 사무총장의 지휘·감독	-국회의장의 지휘· 감독	-국회의장의 지휘·감독	-직무에 관하여는 소속 위원장의 지휘·감독	-소속 국회의원의 지휘·감독
신분 보장	-직업공무원	-직업공무원	-직업공무원	-수석전문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직업공무원으로 신분보장	- 직 업(별정 직) 공무원
총원 과정	-공개채용	-공개채용	-공개채용	수석전문위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공개채용	-소속 국회의원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또는 사무 총장이 임용

자료: 배귀희(2012)

# 제3항 지방의회의 입법지원 조직

<표10> 대전광역시 입법지원 조직 업무분장표

부서	업무분장						
입법정책실	<ol> <li>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개발</li> <li>지방의회 운영 각 분야의 입법정책 연구·조사 및 대안제시</li> <li>입법정책의 수립 및 조정</li> <li>의원의 동의안·건의안·결의안 및 시정질문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li> <li>대전광역시의회의장, 위원장 및 사무처장이 부여하는 사항의 연구·검토 등에 관한 사항</li> <li>각종 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등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전문위원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5. 교섭단체 업무지원 6. 특별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활동 및 의사진행 지원 7. 조례안 등의 기초 및 법제 지원 8.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출처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에 근 거해 입법정책실과 전문위원을 두고 의원의 정책활동 지원을 하 고 있음

- 입법정책실과 전문위원실 모두 정책보좌기능을 수행하지만, 입법 정책실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비롯해 의회 업무 전반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전문위원실은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음
- 다른 광역시도 입법정책관(입법담당관)과 전문위원을 두고 입법 정책관이 좀 더 폭넓은 정책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부산광역시의 회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위원회 소관업무 처리로 제한하고, 입법 정책담당관에 재정정책 분석 등 전반적인 정책보좌 기능을 규정 하고 있음
- 반면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문위원에게 '자치분권 관련 업무 총괄, 기획,조정'과 '의정 및 의정 및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표11> 광역시별 입법지원조직 인원구성표

		입법정책실			전문위원실			비고
지역	의원 수	총원	일반 직	임기 제	총원	일반 직	임기 제	
대구	30	22	1	11	40	34	0	- 민선 7기 의회에서 전문위원실에 정책보좌 임기제 직원 파견
울산	22	11	9	2	29	24	0	- 정책보좌를 위한 임기제 직원 없음
인천	37	15	14	1	68	53	15	- 운영위, 예결위를 제외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정책보좌임기제 직원 3인 배치
부산	47	24	10	14	72	58	0	

광주	23	12	8	4	42	38	4	- 특별전문위원실 (예산결산)에만 정책보좌 임기제 직원(4인) 배치
서울	110	31	15	16	172	57	115	- 전문위원실에는 행정지원을 위한 임기제 직원 없음

출처 : 각 광역시 의회 사무처에 유선 질의를 통해 정리.

- 대구, 울산, 부산의 전문위원실 총원과 일반직, 임기제 합계가 다른 이유는 정책보좌가 아닌 행정지원을 위한 임기제 직원을 제외했기 때문임
- 서울은 입법담당관과 예산정책담당관으로 구분되어 두 부서를 합 친 숫자임
- 서울은 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 포함)을 모두 별정직 또는 임기제 채용함
- 전문위원실 내 일반직 공무원도 위원회별로 5급 1인 외 6급 이하 로 구성되어 있음
- 즉, 일반직 공무원의 업무는 행정지원 업무 중심이라고 판단됨.
- 다른 광역시와 다르게 입법정책실이 아닌 전문위원실에 정책보좌 기능을 집중하고, 인력구성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었다고 보 임

<sup>\*</sup> 임기제는 정책보좌를 위해 채용한 임기제 또는 시간선택제 직원을 뜻함.

# 제4항 책임성 확보를 위한 의회 조직구조

- 현재 지방의회에서 소속 의원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설 윤리특별위원회 와 동료에 대한 심사로 관대화의 경향성이 문제제기 되었음(이동 영, 2021).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고, 산하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 보다 객관적 인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무 용지물로 변할 가능성도 존재함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회의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책임 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나 관련하여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으로 보임

## <표12> 대전광역시의회 혁신과제 세부추진계획

4대전략	추진과제(16개)
투명한 정보공개	1.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게시 2.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공개
소통하는 의회	1. 시의회, 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2. 의장과 의원 간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3. 공무원 정책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4. 의회 전문 옴부즈만 제도 5. 시의회, 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운영 6. 시민패널제도
의회역량강화	<ol> <li>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제도화</li> <li>의원연구단체 제도화</li> <li>효율적인 연찬회 및 해외연수 운영</li> <li>정책보좌관제 도입</li> <li>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li> </ol>
신뢰받는 의회	1. 원활한 원구성 방안 2.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3장

# 심층면접조사

제1절 연구방법 제2절 인터뷰 분석결과 제3절 소결



# 제1항 인터뷰

## □ 연구대상자

- 연구대상자는 의회사무처와 의원 추천을 받아서 선정함
- 의회조직 규모가 작은 관계로 부서를 특정할 경우 인터뷰 대상자 가 드러날 우려가 있어 의원, 사무처직원, 위원회 직원으로 구분 하여 대상자를 예시함

[표13] 인터뷰 대상자와 인터뷰 일시

	인터뷰 일시	
1	의회의원 가	2021. 09. 16
2	의회의원 나	2021. 09. 29
3	의회의원 다	2021. 09. 29
4	사무처직원 가	2021. 09. 15
5	사무처직원 나	2021. 09. 15
6	사무처직원 다	2021. 09. 15
7	사무처직원 라	2021. 09. 16
8	위원회 직원 가	2021. 09. 14
9	위원회 직원 나	2021. 09. 15

## □ 인터뷰 방법

○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인터뷰 대상자에게 질문 을 함

- 근무 부서, 경력 등
- 의회업무의 특성과 어려움
- 사무처 조직의 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 위원회 조직의 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 입법지원관의 배치 부서에 관한 의견
- 인사관리 방안
- 기타 의회발전을 위한 의견
- 연구자는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전사한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의 해석의 과정을 거침
  - 동일한 인터뷰 내용의 경우에도 독해에 따라 다른 해석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 여러 번 읽으면서 하나의 공통된 해석으 로 읽히는 것을 중심으로 재구성함
  - 연구대상자의 인터뷰 당시의 태도, 행동 등을 토대로 전사지 의 내용을 추론하면서 읽음
  -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이익을 근거로 발언하는 것이 명확할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해석함

# 제2절 인터뷰 분석결과

# 1. 사무처 조직

#### □ 입법정책실

- 입법정책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지원 및 입법지원 업무보다는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 발언, 정책토론회, 기고문, 방송인터뷰 자료 작성과 같은 일상 업무 지원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문위원실과 업무분장으로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음
- 입법정책실 임기제 공무원은 석·박사급으로 연구역량이 있는 고 급인력이나 실제 업무수행은 연구업무보다는 단순 업무가 주된 업무로 수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u>조</u> 례안, 건의안, 결의안, 시정 질문, 5분 자유발언, 정책토론회, 토론 자료에서부터 기고문, 인터뷰자료까지 입법정책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방송,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오면 관련 자료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E)

의원님들은 전문위원실이든 정책실에서 하든 갖다 주기만 하면되니까 업무분장에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부서간의 업무분장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 업무가 아니더라도 못하겠다고 못하니까...(F)

000

- 임기제 공무원은 시의회 내에서 승진 또는 다른 직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업무 수행의 동기부여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역량 있는 임기제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으로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경로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 임

임기제 공무원은 현재는 박사급, 석사급 관계없이 모두 6급 경력 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진제도도 없으며, 오래 근무한 직원분들은 10-15년을 근무했어도 6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5 급으로 다시 시험을 봐서 들어온 분이 1명이 있을 뿐입니다. (D)

○ 입법정책실에 정책보좌관을 충원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 장이 제기됨

현재 입법정책실이 조례안 검토, 시정질문 등 지원부서로서 역 할을 담당하는데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을 충원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어, 정책보좌관을 입법정책실에 둘 필요성이 높 습니다.(G)

### □ 총무담당관실

- 현재 총무담당관실의 공보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업·기계직 3명을 제외하면 5명이 의회의 전체 공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SNS 모니터링과 홍보 등을 1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어려운 현실임
- 총무담당관실 공보팀의 업무를 확대하여 홍보, 시민과의 소통기 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해서 **공보팀을 확대해서 홍보소 통담당관실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홍보 소통관련 전문인력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E)

현재 공보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봅니다. 홍종원 의원님이 현재 미디어 소통을 강화하고자 홍보소통담당관 조직을 두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

○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주기 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 이 제기됨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만드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더 있 어야 할 것입니다(F) ○ 민원을 전담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조직을 포함할 필요성이 제 기됨

<u>민원인이 의회에 전화하면 어디에 전화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기어렵다고 합니다.</u> 이 부서에 전화하면 저 부서로 핑퐁이 발생하는데 이를 관리할 민원관리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합니다.(I)

- □ 사무처 조직 보완방안: 예산정책지원 기능 보완 필요
- 의회가 집행기구를 견제하는데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예산에 대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만으로는 집행부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 사무처 조직에 예산, 결산 분석을 전담하고 의원에 대한 사업분 석·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됨

가능하다면 충남도의회처럼 <u>예산정책담당관실을 두는 것이 좋</u> 겠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예결위를 합쳐서 운영하고 남는 인력은 예산정책담당관실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E)

예전에도 예산정책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리 때문에 못하긴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잖아요. 예산을 잘 세웠는지 아닌지. 사업분석을 해서 예산을 치고, 결산을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죠. 지금은 집행부 예산 6조를 두 명이 담당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분석할 수 있는 팀을 하나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일을 하려면 끝도 없는데 안하려면 그냥 저쪽에서 원하는거 다 들어주면 편하게 되는 현실입니다(F)

예산관련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입법정책실 내부에 팀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로 예산정책실을 둘 정도로 규모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G)

## 2. 위원회 조직

### □ 전문위원실2)의 역할과 기능

- 현재 대전광역시 전문위원실은 4급 수석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 과 6급이하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경력직 직 위로 일반 지방공무원이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행정절차의 지원, 즉 각종 집행부에서 올라 온 조례안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의견제시, 집행부와 협의, 의원활 동지원(현장방문 기관협의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전문위원은 4급은 수석전문위원, 5급은 전문위원으로 부르는데 전문위원들은 주로 행정적인 지원, 행정절차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종 조례, 집행부와의 협의, 자료들을 지원, 의원들의 활동지원, 현장방문지원(기관과의 협의 등)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정책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A)

정책지원이 실제로는 행정업무에 대한 정책지원이 되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에 대한 발굴 등은 임기제 분들이 하고 있죠. 전문위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시장님이 임명하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B)

<sup>2)</sup> 정확한 표현은 위원회 배치된 전문위원과 행정직공무원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의 면담자들이 전문위원실로 지칭하고 있어 전문위원실로 표현함.

조례제출시 어떤 절차, 결과, 기관 간 협의, 절차, 자료제출 등을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행정지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A)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별로 위원들을 보좌한다고 보면 됩니다. 입법실은 박사님들이 분야별로 조례, 시정질문 등은 입법실을 통해서 하고, 전문위원실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예산에 대해 검토의견서를 쓰고, 현장방문지원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D)

○ 전문위원실은 기존 집행부에서 담당업무 경험을 근거로 조례안의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는데 단순 '절차적인 문제점'정도만을 검 토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검토의 견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임

전문위원은 안건으로 올라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안건을 검토를 하고, 정책지원관은 안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초안으로서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법제심사를 하고, 의회 정식안건으로 들어가기전에 사전작업을 하는 역할입니다.(C)

전문위원실은 전문가가 와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전절차 등의 절차를 거쳐보고, <u>절차상의 정당성과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입니다. 일반행정직이라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D)</u>

#### □ 정책지원인력의 전문위원실 배치에 대한 의견

- 정책지원인력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의견에 대해 2명의 면담 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음
- 가장 큰 이유로는 정책지원인력을 위원회에 배치하게 되면 정책 지원을 담당해야 할 인력들이 행정직화 되어서 의회 전문성 강화 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신규 정책지원관을 별도의 기구로 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u>일</u> <u>반직과 함께 사무실을 쓰면 정책지원인력도 행정직화 되지 않을</u> 까 우려가 됩니다. (A)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정활동지원이고 정책 지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게 되면 의원의 사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에 매몰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제주의회가 <u>입법정책 담당부서가 최근에 다시 만들어졌고요.</u> 대구가 입법정책실을 없애고 전문위원실로 배치했는데 거기 일하시던 분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셨어요. 전문위원실에서 상임위원실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있으면, <u>사적인 업무지시 등에 대해서도 해야하는데 연구하던 공무원들이 가서 행정공무원이 하던 일을 하면서 연구업무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다 나가더라구요. 대구도 다시 입법정책 담당관실이 다시 생겼습니다.(E)</u>

입법정책실 직원이 현 직급에서 전문위원실로 간다면 <u>행정업무</u> 와 연구업무를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A)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절대 불가하다. 다른 시도도 전문위원실에 임기제 전문직을 둔 적이 있는데 다 실패하였으며, 전문위원실에 입법정책실 연구원을 두게 되면 의원보좌인력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결국 정책지원 역할은 제대로 하기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상 전문위원실의 지방직공무원들에 비해 직급이 낮고 신분불안정으로 인해 단순행정업무를 하는 신분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G)

- 특히 현재 전문위원실에는 일반행정직 4,5,6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기제인 정책지원인력이 배치되게 되면 일반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실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함.
- 이에 일부 면접자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채용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향후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배치되어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입법정책실의 임기제 공무원이 전문위원실로 가면 거의 말단이 되는 거죠. 현재 전문위원실에는 4급, 5급, 6급 2명, 7급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로 입법정책실 임기제 6급 공무원이 가면 말단이라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F)

○ 이외에도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상임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간 칸막이로 인해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닐 경우 정책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됨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두게 되면 예를 들어 환경분야 박사는 환경분야 상임위원회에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환경관련 자문의견을 받기 어려워서 이러한 부분을 걱정하신다.(B)

분야별로 배치되면 타 상임위원실의 전문위원에게 의원분들이 자문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입법실을 한곳에 모으면 조금 편하게 자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D)

○ 소수 의견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전문위원실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소속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이 되기위해서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예전에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u>이제 정책지원관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저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u> 우선 의원들은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다른 상임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야 하는데 다른 상임위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일정 월권적이라고 봅니다. <u>사실 자기 소속 상임위원회에 대한 조례만 해야 하는데 입법정책실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소속상임위원회를 벗어나서 입법을 할 것입니다.</u> 이러한 의미에서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F).

전문성은 연구역량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행정경험을 통한 실행역량도 전문성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경험과 연구하신분들이 함께 해서 시너지가 낼 수 있다면 긍정적이고, 결국 실행시키는 것은 의원님들인데 이게 잘 안되고 하면 인센티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것이 반영되어 바뀌는 것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D)

입법실은 그대로 두고, 신규인력은 전문위원회로 가는 것이 바람 직할 것입니다(D)

### □ 타 시·도 전문위원실 전문성 강화 노력

- 전문위원실의 낮은 전문성 때문에 제주도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 회에 3-4명의 임기제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으나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이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된 의원들이 자문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업무경험에 따라 업무가 일부 정책연구위원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주도의회는 다시 분리하는 것을 검토③중에 있음
- 대구시의 경우에는 입법정책실을 없애고 전문위원실로 배치했는 데 입법정책실에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이 모두 퇴직하는 사태

<sup>3)</sup> 현재(2021.10.01.) 각 전문위원실에 정책연구위원을 3명 정도 배치하고 있으며, 정책입법담당관에 정책분석팀에 5명의 연구원을 배치하고 있음

가 발생하였다고 함.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사적인 업무지시와 일반행정공무원이 하는 일까지 직급이 낮고 신분이 불안 정하여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으로 파악됨<sup>4)</sup>

제주도의회의 경우 7개 상임위원회 별로 3-4명의 임기제 정책연 구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제주도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회 전문 위 원실에 전문위원은 일반지방공무원,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공무 원(임기 5년)으로 보하고 있는데요. 정책연구위원과 면담을 했는 데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고 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하고 있는데 역할과 기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보좌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원회 이외의 다른 상임위원회 조례, 사무감사, 예산결산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일도 해야 해서 업무가 과중되어 어렵 다고 하고, 업무경험에 따라 전문성이 높고, 낮은 분이 있는데 전 문성이 높은 분들에게만 업무를 주어서 어려움이 있고, **연말 평가** 에서는 일 시킬 때는 많이 주는데 소속 상임위원이 평가를 해서 평가 따로 일 따로라서 억울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주에서는 따 로 사무실을 두고 중간관리자를 두어서 업무가 몰리지 않고, 평가 도 공정하게 하도록 중간관리자 역할을 생각을 하시더라구요. 대 구시의 경우에도 이렇게 실험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A)

### □ 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 채용

○ 현재 대전광역시는 4급, 5급 전문위원 모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

<sup>4)</sup> 현재(2021.10.01)는 입법담당관실에 담당관 포함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선 7기에 전문위 원실에 정책보좌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한 시도가 있었음

로 경력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과거 집행부에서 승진 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와 같이 개방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전문위원실에 일반직이 와 있는데 서울은 전문직이 개방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전문위원은 전문가들이 와야 합니다. 상임위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행정직은 행정역할만 하면 됩니다. 회의진행, 행사를 도와준다든지 등지 역할만을 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일은 전문직이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행정직이 조례를 한번도 만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와서 검토를 하는데 내용을알지 못하는 행정직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이과출신이 와서 법적 검토를 바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집행부에서도 오랜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위원실은 사실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문위원실 4급을 서울이나 다른 곳처럼 개방직으로 하여 전문가가 오도록 하면 좋을것입니다.(F)

갓 승진한 직원 등이 전문위원이 되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임기제공무원이 전문위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열어 줘야 한다.(H)

5급 전문위원 자리가 없다가 만들 때, 타 시도는 거기를 경력직하고 개방형으로 복수로 해서 전문위원 자리를 개방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대전시는 모두 경력직으로 만들었죠. (E)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실에 수석전문위원도 임기제 공 무원 또는 별정직이고, 입법조사관 5급을 배치하고 있습니다.(E) ○ 특히 현재 전문위원실이 행정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정 책지원 전문인력이 가게 되면 부정적이지만, 전문위원이 개방직 으로 전문가가 채용되게 된다면 임기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 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현재 상태에서 입법정책 지원인력들이 전문위원실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전문위원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 가 있은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간다면 상호 이해도 할 수 있고 좋 은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E)

# 3. 인사관리

○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게 되면, 의회 규모가 작아 서<sup>5)</sup>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국회, 서울, 경기와 똑같은 고민이 규모가 되지 않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가 100여명, 구의회는 20명 내외인데 이들이 뚝 떨어지면 정책지원관 못지 않게 승진이 어려 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A)

지금 조직에서 어려운 점은 연구원을 빼면 60여명이 되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인사관리가 어려울 것입니다.(G)

-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면, 인사관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정실인사를 우려하여 정책지원관 등 지원인력의 임기를 의 원임기와 함께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함

정실인사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u>집행부는 인원이</u> 많아서 인사기준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객관적인 인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의장님 임기가 다 따로 있고 사람 수도 적어서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 우려가 됩니다.(A)

<sup>5)</sup> 의회 사무처 정원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 79조에 따라 88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정책지원관의 임기를 의장님과 같이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 게 되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서 새로운 의회의원 임기와 함께 설정하면 정실인사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B)

○ 의장의 정실인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과 정을 시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함

의장의 정실인사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치구가 채용을 시청에** 위탁하듯이 의회 채용에 대해 집행기관에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의회가 집행부에 필요 직렬과 직급 및 조건을 제시하고 집행부가 가장 적임자를 의회를 대신하여 채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D)

의장이 집행부에 위탁하면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의 임기가 2년이라서 짧은 기간 동안에 의장이 영향을 미친 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F)

○ 승진심사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와 전문위원실의 평가를 구분하여 이원화 할 것을 제안하고, 평정규칙을 엄격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함

시장님도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이건 의회만의 문제라기 보다는 의장님의 어떠한 분인지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집행부는 부서장에 대한 평가이후 국장이 평가하고 이후 인사혁신담당관에서 결정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과장급까지도 2-3 배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이 높습니다.

의회에 적용시킨다면 의회의 경우 의장의 역할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전문위원실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원화를 한다면, 운영전문위원실 수석이 전문위원실을 평가하도록 하고 운영전문위원실 수석이 사무처장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F)

현재 의장의 임기가 2년이라서 임기동안 충성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u>평정규칙을 명확하게 하여 의장의 사견이 개입되</u>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치구와의 인사교류에 대해 면접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
- 그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승진과정에서 자치구와 협의과정에서 갈 등이 발생할 것을 가장 우려함
- 시의회 직원들의 자치구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점을 주는 방안 을 제시하기도 함

자치구에서 임용권을 가지고 있어서 인사문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관운이라고 해서 어떤 구는 빨리 나가고 어디는 인사적 체가 되고 해서 문제가 있게 됩니다. <u>이번에 A라는 자치구에서</u> 양보를 하면 B라는 자치구에서 다음에 양보를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직의 경우 시, 구와의 편차가 큽 니다. 통합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100% 실패를 했습니다. <u>승진과</u> 정에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행태들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실패해왔습니다.(A) 시의회에서는 구의회로 누가 자발적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어 요?(B)

기관대 파견으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고과를 같이 섞여서 같이 점수를 매기지 않는 한, <u>기초의회와는 파견 갈 경우 인센티</u> 브를 **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D)

○ 일부 구의회와의 인사교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평가와 인사권을 구와 시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방안을 선호하기 때문에 파견형식에 의한 인사교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구의회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저는 독립이 되어서 의회직이라고 해서 구의회와 인사교류는 찬성입니다. 다만, 인사권을 시,구 모두 갖고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구청 기술직의 경우 인원이적어서 인사는 시에서 동시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의회직원에 대한 평가는 구의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현재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 평가는 우선 의회에서 하고 집행부에 가서 순서대로 정한 것을 전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나열하고 이 순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F)

- 집행부와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구의회와의 인사교류보다는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인사교류의 경우에도 파견 형식으로 하고,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인사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구의회와의 인사교류보다는 <u>집행부와 1:1 인사교류를 하는 방안이</u> <u>더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u> 현실적으로 대안은 없는 상황인데, 의회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장이 권한을 가지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A).

총무담당관실(20명), 의사담당관실(25명)은 집행부와 업무 기능이 유사하여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가능할 것입니다.(B)

초창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사가 풀려서 좋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고인물이 되어서 어려울 텐데, 나중에 시와 파견과 교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들 숫자가 늘지 않는 한 직원 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와의 교류나 파견이 가능할 것입니다. 시청에서도 파견 기관이 의회가 하나 추가되는 것에 불가할 것입니다. 의회에 올 사람은 신출내기가 오면 안 되고 전문성을 갖춘 자들이 와야 하는데. 총무과, 의사담당관실은 상관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전문 위원실)에는 기초에서 와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D)

인사권 독립이라고 해도 지금과 같이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되는 것이고, 인사권 독립의 대원칙을 지키면서 하려면 당분간은 파견형식으로 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초의회, 집행부와의 파견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승진을 섞어서 하면 안 되고 독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점을 주는방식으로 하고 실제 인사고과는 원청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D).

○ 집행기관하고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임

집행기관하고 교류는 반대합니다. 시하고 출연기관 파견은 괜찮은데 집행부와 의회간의 인사교류를 한다는 건 반대입니다. 인사교류를 하게 되면 지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즉, 의회의 인사권독립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파견을 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과 생각 마인드가 다를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새로 탄생할 때는 딱 단절시키고 독립을 시켜야 효과가 있지 현재 이익보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5급 몇 년차 몇 명, 6급 몇 명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시 뽑으면 되잖아요. 파견 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틀립니다.(F)

# 1. 사무처 조직

### □ 입법정책실

- 입법정책실은 전문성을 요하는 정책지원 및 입법지원 업무보다는 건의안, 결의안, 5분 자유 발언, 정책토론회, 기고문, 방송인터뷰 자료 작성과 같은 일상 업무 지원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됨
- 입법정책실 임기제 공무원은 석·박사급으로 연구역량이 있는 고 급인력이나 실제 업무수행은 연구업무보다는 단순 업무가 주된 업무로 수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임기제 공무원은 시의회 내에서 승진 또는 다른 직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서 업무 수행의 동기부여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역량 있는 임기제 공무원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임기제 공무원의 승진경로 및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입법정책실에 신규 정책보좌관을 충원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는 주장이 제기됨

# □ 총무담당관실

○ 현재 총무담당관실의 공보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업·기계직을 3명을 제외하면 5명이 의회의 전체 공보업 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

- SNS 모니터링과 홍보 등을 1명의 직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 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이 어려운 현실임
- 총무담당관실의 공보팀의 업무를 확대하여 홍보, 시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
-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SNS를 활용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주기 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 이 제기됨
- 사무처 조직 보완방안: 예산정책지원 기능 보완 필요
- 의회가 집행기구를 견제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예산에 대한 분석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 인력만으 로는 집행부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통제가 어려운 상황임
- 사무처 조직에 예산, 결산 분석을 전담하고 의원에 대한 사업분 석·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됨

# 2. 위원회 조직

### □ 전문위원실

○ 현재 대전광역시 전문위원실은 4급 수석전문위원, 5급 전문위원 과 6급이하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경력직 직 위로 일반 지방공무원이 집행부의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행정절차의 지원, 즉 각종 집행부에서 올라 온 조례안에 대한 사후적인 검토의견제시, 집행부와 협의, 의원활 동지원(현장방문 기관협의 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은 기존 집행부에서 담당업무 경험을 근거로 조례안의 검토 등 업무를 담당하는데 단순 '절차적인 문제점'정도만을 검 토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전문위원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 검토의 견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임

### □ 정책지원인력의 전문위원실 배치에 대한 의견

- 정책지원인력을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의견에 대해 2명의 면담 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였음
- 가장 큰 이유로는 정책지원인력을 위원회에 배치하게 되면 정책 지원을 담당해야 할 인력들이 행정직화 되어서 의회 전문성 강화 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 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의정활동지원이고 정책 지원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게 되면 의원의 사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에 매몰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특히 현재 전문위원실에는 일반행정직 4,5,6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임기제인 정책지원인력이 배치되게 되면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실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을 우려함
- 이에 일부 면접자는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개방형으로 채용 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면, 향

후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이 배치되어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이외에도 정책지원전문인력을 상임위원회 소속의 전문위원실에 배치하게 되면 상임위원회간 칸막이로 인해서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닐 경우 정책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됨
- 소수 의견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전문성이 전문위원실의 전문 성 강화에 기여하고, 소속상임위원회 중심의 입법활동이 되기 위 해서는 전문위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 타 시·도 전문위원실 전문성 강화 노력

- 전문위원실의 낮은 전문성 때문에 제주도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 회에 3-4명의 임기제 정책연구위원을 두고 있으나 장점보다는 단 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됨
- 이유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 회 소속된 의원들이 자문을 받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상임위원 회 소속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 문제와 업무경험에 따라 업무가 일부 정책연구위원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 주도의회는 다시 분리하는 것을 검토 중임
- 대구시의 경우에는 입법정책실을 없애고 전문위원실로 배치했는 데 입법정책실에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이 모두 퇴직하는 사태 가 발생하였다고 함
-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 소속으로 사적인 업무지시와 일반행정공무 원이 하는 일까지 직급이 낮고 신분이 불안정하여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으로 파악됨<sup>6)</sup>

### □ 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 채용

- 현재 대전광역시는 4급, 5급 전문위원 모두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경력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과거 집행부에서 승진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와 같이 개방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특히 현재 전문위원실이 행정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임기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전문위원이 개방직으로 전문가가 채용되게 된다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됨

# 3. 인사관리

-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게 되면, 의회 규모가 작아 서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지면, 인사관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특히 정실인사를 우려하여 정책지원관 등 지원인력의 임기를 의 원임기와 함께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함
- 의장의 정실인사를 막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과 정을 시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함

<sup>6)</sup> 현재(2021.10.01)는 입법담당관실에 담당관 포함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선 7기에 전문위 원실에 정책보좌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한 시도가 있었음

- 승진심사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와 전문위원실의 평가를 구분하여 이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평정규칙을 엄격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자치구와의 인사교류에 대해 면접자 대부분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함
- 그 이유로는 현실적으로 승진과정에서 자치구와 협의과정에서 갈 등이 발생할 것을 가장 우려함
- 시의회 직원들의 자치구로의 인사이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갈등이 우려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점을 주는 방안 을 제시하기도 함
- 일부 구의회와의 인사교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으나 평가와 인사권을 구와 시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방안을 선호하기 때문에 파견형식에 의한 인사교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 집행부와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구의회와의 인사교류보다는 긍 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인사교류의 경우에도 파견 형식으로 하고,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인사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집행기관하고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훼손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임

제4장

# 의회 조직구조 개편안

제1절 조직구조 개편원칙

제2절 단기개편안

제3절 장기개편안

제4절 인사관리방안

#### 000

# 제1항 전문성

#### □ 예산 심의기능 강화

- 예산과 결산 심의는 의회의 업무 중 입법 기능과 함께 중요한 업무이며,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됨
- 대전광역시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는 주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검토인력은 2명 정도에 불과함
- 현재 인력만으로는 집행부 예산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통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예산결산 심의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의원에게 의견을 개진할 전문인력의 확충과 조직의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 □ 전문역량 강화

- 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집행부를 견제·감시하여 불필요한 정책의 집행을 사전적으로 막고,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의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지원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각 분야의 박사급 인력인 정책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인력의 배치를 해야 할 것임
- 인터뷰 결과, 정책지원인력을 위원회에 배치하게 되면 정책지원을 담당해야 할 인력들이 행정직화 되어서 의회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의견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의회 조직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추가되는 정책지원관 인력을 위원회에 배치하기 보다는 사무처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장기적으로는 위원회 전문위원을 개방직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등의 위원회 전문성 강화도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 제2항 민주성

### □ 견제와 균형의 원리

-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조직내에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필 요가 있음
- 사무처 조직의 권한과 규모가 비대해지거나 위원회 조직인 전문 위원실의 조직권한과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음
- 사무처 조직은 의회 의원의 전문적인 지원역할을 담당하고, 위원 회 조직은 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절

한 역할과 사무배분 및 인력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하나의 조직이 지나치게 권한이 커지게 되면 의회 운영에 있어 효 율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의회의 부서가 많아지고 사무처장의 통솔범위가 넓어질 경우 각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일부 업무를 통솔할 수 있는 기획조정담당 직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 시민소통 강화의 필요성

- 지방정치에 대한 주민들의 낮은 관심은 의원들의 다양한 노력과 역할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오고 있음
-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의회의 다양한 역할과 성과들이 제대로 주 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부정적인 뉴스만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 의회 스스로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조직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공보팀의 업무를 확대하여 홍보, 시민과의 소통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제3항 효율성

# □ 효율적인 민원 대응 능력

○ 현재 시민들이 의회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를 특정 하여 민원을 제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민원업무에 대해 직원간 회피 현상이 발생함

-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의회 직원들의 책임 떠넘기기로 비칠 수 있어 민원창구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인 민원대응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 인력운용의 효율성 강화

- 현재는 의회 사무처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 어 상대적으로 인사업무가 크지 않고 전담인력도 많지 않은 상황 임
- 인사권이 독립되고 조직이 팽창되면, 조직과 인력운용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제4항 책임성

# □ 윤리특별위원회

- 의회 의원에 대한 윤리강화를 통해 전체 의회에 대한 대국민의 신 뢰를 회복해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를 구성하게 되었음

#### 88 1 제4장 의회 조직구조 개편안

○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위원회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 요가 있음

#### □ 상위법령 존중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38조는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 원 전문인력을 정책지원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 동조 제2항에서는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지원관의 신규임용, 파견, 전보 등 임용절차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상위법령에서 정책지원관을 의원 개인의 사적인 사무를 위해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제2절 단기개편안

# 제1항 조직구조

#### □ 현행 조직구조

○ 2021년 9월 기준 사무분장표 상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조직은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의 2담당관과 입법정책실의 1실로 구성되 어 있음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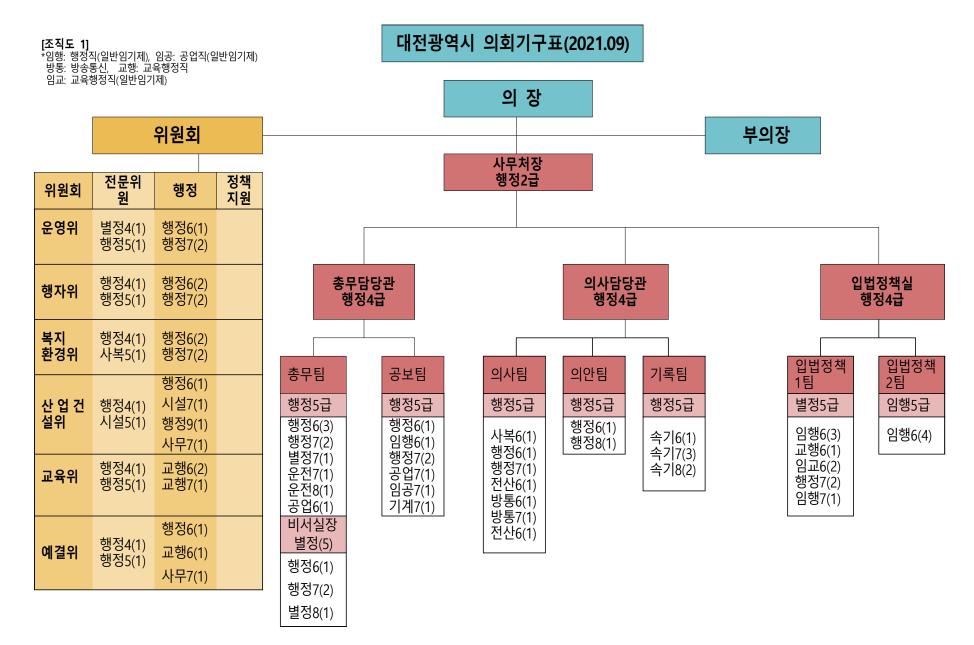
- 총무담당관에 총무팀, 공보팀, 비서실 조직이 있으며, 의사담당관 에 의사팀, 의안팀, 기록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법정책실에는 입법정책1팀과 2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반면, 위원회 조직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6개의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음
- 2021년 9월 기준으로 전문위원실에 33명, 60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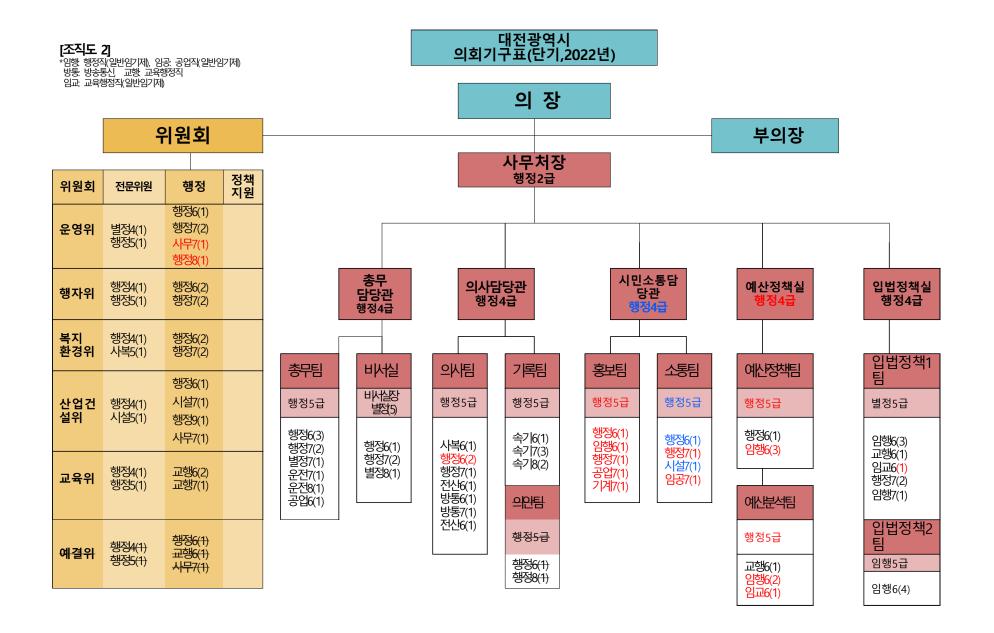
# □ 단기개편 조직구조

- 단기개편 조직구조는 [조직도 2]에 있는 바와 같이 3담당관, 2실 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함
- 단기에는 2022년 입법정책실의 5명 인력 충원과 추가 확보한 4명 의 직원을 추가 배치하는 안을 제시함
- 기존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에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기

존 입법정책실 이외에 예산정책실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을 제시 함

- 총무담당관 공보팀을 홍보팀으로 변경하여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시민소통담당관에 소통팀을 신설함
- 의사담당관에 있던 의안팀을 폐지하고 기존 기능을 의사팀에 흡 수 통합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 기존 기능 중 위원회 운영기능은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능은 신설 예 산정책실에서 담당함





# 제2항 신설조직

#### □ 시민소<del>통</del>담당관실

- 신설 시민소통담당관실은 행정직 4급 실장을 두고 홍보팀, 소통 팀의 2개의 팀을 조직함
- 홍보팀에는 행정5급 팀장과 행정6급1명, 행정직(임기제6급)1명, 행정7급1명, 공업7급1명, 기계7급1명의 총 6명으로 인력을 배치 함
- 소통팀에는 행정5급 팀장과 행정6급1명, 행정7급1명, 시설7급1명, 공업직(임기제7급)1명으로 총 4명으로 구성함
- 향후 소통팀에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전문인력을 재배 치 또는 신규 충원할 필요가 있음

	시민소통담당관실 행정4급1명(실장)*		
	홍보팀	소통팀	
인력배정	행정5급(팀장) 행정6급1명 임행6급1명 행정7급1명 광업7급1명 기계7급1명	행정5급(팀장)* 행정6급1명* 행정7급1명 시설7급1명* 임공7급1명	

\* 신규채용 인력

### □ 예산정책실

- 신설 예산정책실은 행정4급 실장을 두고 예산정책팀, 예산분석팀 의 2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함
- 예산정책팀은 행정5급 팀장과 행정6급1명, 행정직(임기제6급)3명 으로 총 5명의 인력을 배치함
- 예산분석팀은 행정5급 팀장과 교육행정직6급1명, 행정직(임기제6 급)2명, 교육행정직(임기제6급)1명의 총 5명의 인력을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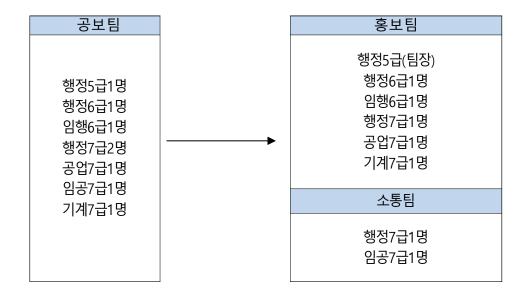
	예산경	덩책실	
	행정4급1명(실장)*		
	예산정책팀	예산분석팀	
인력배정	행정5급(팀장) 행정6급1명 임행6급3명**	행정5급(팀장) 교행6급1명 임행6급2명** 임교6급1명***	

<sup>\*</sup>행정4급1명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직 \*\*임행6급5명 신규채용 \*\*\*임교6급1명은 입법정책실 입법정책1팀에서 소속변경

# 제3항 명칭변경 및 폐지조직

#### □ 명칭변경

- 공보팀은 명칭을 변경하여 홍보팀으로 변경하고 인력 대부분도 홍보팀으로 배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다만 시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인력의 경우에는 소통팀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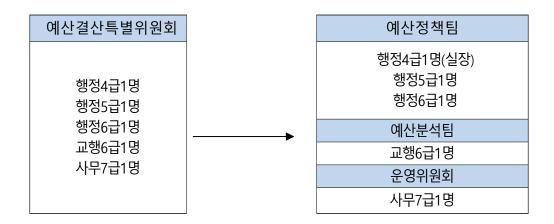
- 의사담당관실의 의안팀은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팀 조직으로 보기에는 적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음
- 담당업무의 경우에도 전문성의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96 1 제4장 의회 조직구조 개편안

- 의안팀을 폐지하고 기존 인력을 소통팀, 의사팀, 운영위원회에 재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함
- 다만 현재 인력의 재배치는 반드시 제시된 소통팀, 의사팀, 운영 위원회로 배치되기보다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전체 인력에 대한 재배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의안팀		소통팀
행정5급1명		행정5급1명
		의사팀
행정6급1명 행정8급1명		행정6급1명
		운영위원회
		행정8급1명

- 기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폐지하고 대신 예산정책실의 예산정 책팀과 예산분석팀으로 인력을 재배치함
- 일부 위원회 운영관련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 사무직 7급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000

# 제1항 조직구조

#### □ 단기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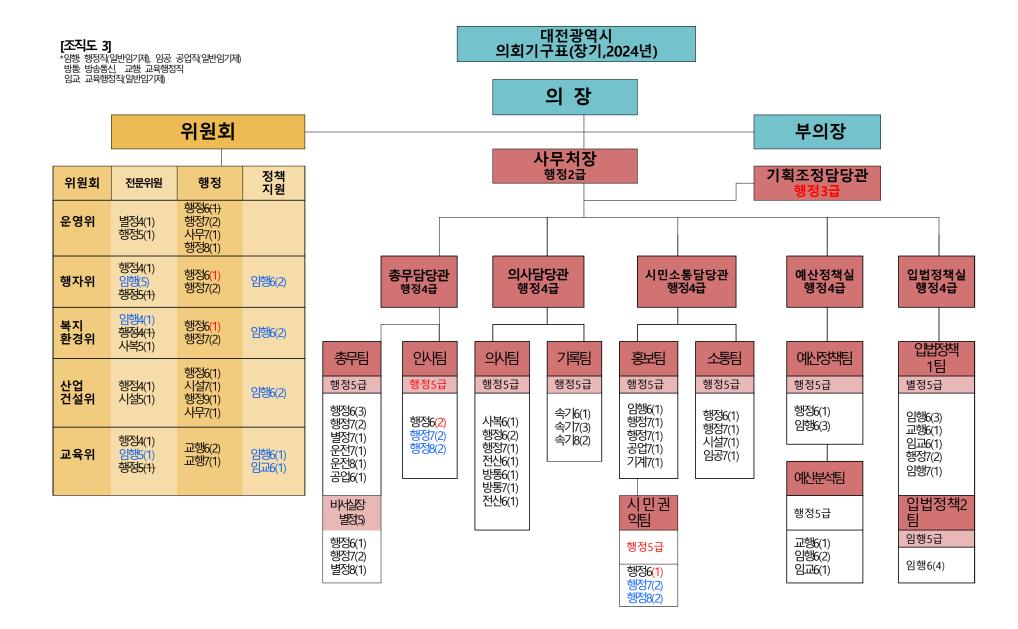
- 단기의 조직구조는 3담당관, 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총무담 당관, 의사담당관에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기존 입법정책 실 이외에 예산정책실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을 제시하였음
- 단기 조직구조를 바탕으로 장기조직구조 개편안을 제시함

#### □ 장기개편 조직구조

- 단기 조직개편안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한 조직개편안이라면, 장 기 조직개편안은 입법정책실에 추가적인 인력 7명을 배치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하여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제시함
- 장기조직개편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조정역할과 사무처장을 보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현재 4급 직원들의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조정담당관을 신설하는 안을 제시함기
-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인사관리 업무 증가로 인해 총무담당관 에 인사팀을 신설하고, 시민민원 대응을 전담할 시민권익팀을 신 설하여 2팀의 증가를 제시함
- 전문위원실에 신규 채용될 행정직(임기제6급)7명을 추가 배치하 여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을 강화함

<sup>7)</sup> 참고로 현재 서울시의회는 사무처장을 보조하기 위해 입법정책자문관을 두고 있음

- 전문위원실 중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개방직화하여 외부에서 전문가를 충원하거나 기존 임기제 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행자위, 교육위의 전문위원을 임기제 행정직으로 변경하여 전문 성을 강화함



## 제2항 신설조직

## □ 인사팀

- 인사팀을 신설하고 행정5급을 팀장으로 하여 행정6급 2명, 행정7 급 2명, 행정8급 2명을 추가로 배치함
- 행정6급 2명은 기존 행정자치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직원 을 각각 1명씩 재배치함
- 행정7급, 행정8급은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여 신규채용할 필요가 있음

	인사팀
인력배정	행정5급(팀장)* 행정6급2명* 행정7급2명** 행정8급2명**

<sup>\*</sup> 전문위원실 소속, \*\*신규채용

## □ 시민권익팀

- 시민 민원을 받는 단일창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각 부서에 민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시민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할 시민권익팀을 신설함
- 시민권익팀은 행정5급 팀장과 행정6급 1명, 행정7급2명, 행정8급 2명으로 구성함
- 행정6급은 전문위원실 인력을 배치하고, 행정7급과 8급은 신규채 용함

	시민권익팀
인력배정	행정5급(팀정)* 행정6급(명* 행정7급2명** 행정8급2명**

\*전문위원실 소속, \*\*신규채용

## □ 기획조정담당관

- 현행 2담당관 1실 체제에서 장기에는 3담당관 2실로 사무처 조직 이 팽창되면서 사무처장의 통솔범위가 넓어지게 됨
- 각 부서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일부 업무에 대해 사무처장을 보좌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담당관 직위를 신설함
- 기획조정담당관은 행정3급으로 직급을 신설하여 현재 행정4급 실 장급의 승진적체 문제를 해결함

## 제3항 인력재배치

## □ 전문위원실 정책지원관 배치

-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방직화, 행자위, 교육위의 전문 위원의 개방직화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전제로 전문위원실에 정 책지원관을 배치함
- 전문위원실이 단순 행정업무가 아닌 의원의 입법지원 중심으로 업무가 강화되게 되면 신규채용되는 정책지원관 7명을 전문위원 실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기존 전문위원실의 행정직 6급 인력은 사무처 조직으로 소속을

## 102 | 제4장 의회 조직구조 개편안

변경하고 전문위원실의 행정직은 가능한 단순행정업무를 담당할 하위직급을 배치함

# 제4절 인사관리방안

## □ 전문위원실 직위 개방직화

○ 대전광역시 시의회는 4급, 5급 전문위원 모두 일반직 지방공무원 으로 경력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000

- 그러나 다른 지자체의 전문위원은 개방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일반직으로 전문위원실이 구성되면서 전문적인 역할보다는 행정 지원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임기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근무하게 되면 행정 직화 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전문위원실이 조례안 등의 입법검토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며, 개방직 직위를 늘릴 필요가 있음

## □ 채용

-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면서 의회 사무처 직원의 채용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다만 신규채용인원이 많지 않고, 전문적으로 채용과정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 보되기 어려움

○ 따라서 채용권한은 의장이 보유하여 필요인력과 자격조건 설정 등은 의장이 결정하지만, 채용과정은 집행부에 위탁하여 공정성 과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 인사관리

- 의회의 인사권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게 되면, 의회 규모가 작아 서 승진, 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어려움이 예상됨
- 승진심사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처와 전문위원실의 평가를 구분하여 이원화할 것을 제안하고, 평정규칙을 엄격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인사교류는 희망자가 있을 경우 집행부, 자치구 의회와의 인사교 류를 추진함
- 다만, 현재와 같은 인사교류는 의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의회 조직이 안정화 되기 전까지는 집행부와의 인사교 류는 당분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강상원·최병대. (2010). 지방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지방공무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 5-27.
- 권영주.(2011).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한국 인사행정학회보」, 10(2), 1-31.)
- 김영하.(2011).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의정활동에 미친 영향 분석(2) -민선 4기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9(1), 91-128.
- 김유라. (2018). 지방분권 논의와 지방의회 역할강화 방안 모색. 「법학<del>논총」</del>, 42(4), 233-270,
- 김태영. (2018).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논의. 「한국지방행정학보」, 15(3), 201-221.
- 류춘호. (2020).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와 의정활동 지원. 「월간 공공정책」, 180, 23-25.
- 문재태. (2019).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및 회복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동계 학술발표논문집, 313-326
- 박기관·최진혁·김찬동·배귀희·김서용·김종섭.(2018).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 위상 정립 및 지방의회의원 역량 강화방안. 「2018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보고서」.
- 배응환. (2010).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및 영향력 지방정책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연구」18(4), 171-194.
- 서우선. (2006). 한국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연구. 「정부행정」, 7(1), 83-110.
- 안영훈. (2013).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2013(0), 1-214.)
- 이관행. (2014).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지원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논집」, 14(0), 18-37.
- 이기우/하승수, (2007). 지방자치법, 「대영출판사」. 248
- 이동영.(2021).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월간 공공정책」, 183, 22-24.
- 이승철.(2019).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3(4), 209-231.
- 임승빈.(2013),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방안; 지방의회의 전문 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국회의원 정청래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집」.

- 조순제. (2012). 지방의회의 기능발휘 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9(3), 163-192.
- 진세혁·임병현. (2005). 외국의 지방의회 정책보좌 기능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12(1): 35-58.
- 채원호. (2010).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방안.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0(15), 25-72.)
- 최봉기 외(1993).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방안: 분석틀의 구성을 중심으로. 「대구경북행정학회보」, 5.
- 최진혁 외.(2019). 대한민국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지방분권개헌, 「한국지방자치학회」.
- 한상우. (2007). 지방의회의 인사권독립과 의정보좌제 도입방안. 「서울특별시의정회주최 세미나 발표문」.
- 홍정선. (2013).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53.
- 홍준현. (2021). 지방의회 30년의 평가와 역할정립.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발제문」.
- 황동연, 배귀희. (2019).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원 역량강화 방안. 「국가정책연구」, 33(2), 263-287.
- Squire, Peverill. (2007). "Measuring state legislative professionalism: The squire index revisited". \(^{\text{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7: 211-227.

## [부록 1] 국회사무처법

제1장 총칙 [개정 2018.6.12]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2.]

##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처리
-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 8.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
-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1.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8.6.12.]

## 제3조(공무원의 임용)

-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제2장 사무처 [개정 2018.6.12]

## 제4조(사무총장)

-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12.]

## 제5조(차장)

- ① 차장은 입법차장·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8.6.12.]

#### 제6조(의장비서실)

-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8.6.12.]

#### 제6조의2

삭제 [2020.5.29]

## 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 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 ② 사무총장, 차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 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補)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 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 다.
- ④ 제3항 및 제8조제3항·제4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 ⑤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제3장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개정 2018.6.12]

#### 제8조(위원회의 공무원)

- ① 위원회에 수석전문위원 1명을 포함한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입법조사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의 입법심의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둘 수 있다.
- ②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하고 차관보와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 ③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2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보한다.
- ④ 입법심의관은 2급 또는 3급, 입법조사관은 3급부터 5급까지인 일반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 다)으로 각각 보한다.
- ⑤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특별위 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⑥ 전문위원의 임용자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6.12.]

## 제9조(전문위원의 직무)

- ①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 1.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그 자료의 제공
-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
- 4. 의사진행의 보좌
- 5.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6.12.]

제4장 보칙 [개정 2018.6.12]

#### 제10조(법인의 설립)

-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공 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예

산정책처장 또는 국회입법조사처·국회입법조사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6.12.]

####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정한다. [전문개정 2018.6.12]

## [부록 2] 국회사무처 직제(국회 규칙 제226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하부조직)

- ①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법제실·의사국·국제국·관리국·방송국·의정연수원·인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법제실·의사국·방송국은 입법차장 밑에, 기획조정실·국제국·관리국·의정연수원·인사과·운영지원과는 사무차장 밑에 둔다. [개정 2011.8.26] [[시행일 2011.9.27]]
- ②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문화소통기획관·공보기획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 밑에 경호기획관 및 국회민원지원센터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2016.11.24, 2020.5.28] ③ 실·국 및 관(이하 "실·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팀 및 이에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 제3조(문화소통기획관)

① 문화소통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112 | 참고문헌

[개정 2013.12.13, 2020.5.28]

- ② 문화소통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5.28]
- 1. 문화행사 등을 통한 국회활동 및 정책 관련 홍보
- 2. 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
- 3. 헌정기념관 운영
- 4. 국회사료 등 헌정자료의 수집·편집 및 발간
- 5. 미술품 관리

[본조제목개정 2020.5.28.]

## 제4조(공보기획관)

- ① 공보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공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 1. 주요 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 2. 보도계획의 수립 및 보도자료 배포
- 3. 국회활동의 대외공표, 언론취재의 지원, 국회 관련 언론보도의 분석· 대응
- 4.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 5. 국회청사 내 취재질서의 유지

[본조신설 2020.5.28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 제5조(감사관)

- ① 감사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10.11]
-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 2.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 5.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7.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 8. 인권침해 조사 ·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본조개정 2020.5.28 제4조에서 이동]

#### 제5조의2(경호기획관)

- ① 경호기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② 경호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 2016.11.24]

- 1. 국회의 경호 및 방호
- 2. 국회의 방청
- 3. 국회의사당 참관의 지원 및 안전검색
- 4. 출입증의 발급 · 관리
- 5.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시행일 2012.5.30.]]

##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문헌

-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 ②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1. 청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2. 진정 및 행정민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 3. 의원회관 의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6.11.24.]

## 제7조(법제실)

-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정치행정법제심의관·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1.4.29]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정치행정법제심의관·경제산업법제심의관 및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9]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 3.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 4.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 ④ 정치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사법·행정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
- 여, 경제산업법제심의관은 재정·산업·국토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
- 여, 사회문화법제심의관은 환경·교육·복지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1.4.29.]

#### 제8조(의사국)

-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정기록심의관 1인을 둔다. [개정 2011.8.26] [[시행일 2012.5.30]]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정기록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8.26] [[시행일 2012.5.30]]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8.26] [[시행일 2012.5.30]]
-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 2. 교섭단체·의석배정 및 위원선임 등에 관한 업무
- 3.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 4. 의안 등의 접수·배부·회부 및 이송
- 5.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 · 편집 및 발간
- 6. 삭제 [2011.8.26] [[시행일 2012.5.30]]
- 7. 삭제 [2011.8.26] [[시행일 2012.5.30]]
- 8. 삭제 [2011.8.26] [[시행일 2012.5.30]]
- ④ 의정기록심의관은 제3항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1.8.26] [[시행일 2012.5.30.]]

## 제8조의2(방송국)

- ① 방송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② 방송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시행일 2011.9.27.]]

## 제9조(기획조정실)

-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및 디지털정보 심의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3.12.13, 2021.4.29]
-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021.4.29]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2021.4.29]
-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 2.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조정
- 3. 국회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 4. 조직 및 정원 관리
-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 6. 제안제도의 운영
- 7. 국회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 8.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의 총괄
- 9.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다만,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10. 국회 디지털정책 추진업무의 기획·조정 및 지원
- 11. 사이버테러 예방 · 대응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사항
- 12.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 13. 국회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디지털정보심의관은 제3항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6.11.24, 2021.4.29]
- ⑤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2호 및 제13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 다. [개정 2016.11.24.]

#### 제10조(국제국)

- ① 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의전
- 2. 의회외교정책의 기획 및 총괄
- 3. 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영접
- 4. 통역·번역 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 5. 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 6. 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 7.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 8.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 9.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 10.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소관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 ④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 제11조(관리국)

-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시설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 ② 관리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공업부이 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심의관은 공업부이사 관·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 1. 국유재산의 관리
- 2. 국회청사의 유지·보수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 3. 의원회관 일반관리

- 4. 기계·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관리
- 5. 물품 관리
- 6.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물 피해의 예방·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 ④ 시설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 제12조(의정연수원)

-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3, 2016.11.24]
- 1.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연구개발
- 3.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 4. 시민의정연수
- 5. 고성연수원의 운영 및 관리
- ④ 교수는 강의, 교재집필 및 감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3.12.13.]

#### 제13조(인사과)

-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 2.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3. 인사 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4. 공무원 평정 및 성과 관리
-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6.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 제14조(운영지원과)

-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 2. 문서의 분류·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 3. 국회의원의 등록
- 4. 당직관리
- 5.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6. 후생 및 복지

- 7. 국고금의 집행·회계 및 결산
- 8.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 9. 삭제 [2016.11.24]
- 10.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5조(공무원의 정원)

-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입법고시 및 국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6조(정원의 통합관리)

-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3.12.13]
- 1. 일반직공무원의 6급 · 7급 · 8급 · 9급
- 2. 삭제 [2013.12.13]
- 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제 17조

삭제 [2011.8.26] [[시행일 2011.9.27.]]

### 제18조(위원회의 공무원)

- ①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 ②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 ③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 ② 미주지역 중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지역

에 두는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임용·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 제20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사무총장은 법제·예산분석·정책분석·통역·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본조제목개정 2013.12.13.]

제21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